

**통일문제**

**해외시사 자료집 '93**

**통권 제 3 호**

**통일원 정보분석실**



## 「새 역사, 새 정부 그리고 통일」

59차 관훈토론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기전에 “새 역사, 새 정부 그리고 통일”이란 제목으로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격변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 위치에서 통일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축(軸)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그마한 가지의 변화가 아니고 뿌리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10년전에 냉전 체제가 그토록 빨리 해체되리라고 예측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축의 변화로서의 냉전체제 해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구미(歐美) 중심 문화권에 대한 비구미(非歐美) 문명권의 대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년 가까이 구미 중심의 세계사는 구미의 민족국가(Nation State)를 단위로 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지역의 민족국가가 세계사의 동인(mover)이나 독립변수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1917년 볼세비키혁명 이후에는 넓은 의미에서 서방의 민족국가들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세계와 역사를 재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지나가면서 국가, 계급,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 못지않게 민족, 종교, 문화의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구미 문명권 중에는 이슬람 문화권도 있고, 힌두, 불교 문화권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교문화권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한반도, 일본이 자리 잡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에서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중심으로 이 지역을 Far East, 곧 극동의 변방으로 보았던 시각은 지금 교정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변방으로 서의 극동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중심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을 이와같은 유교 문화권의 강세의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이 아세아와 태평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초위에서 펼쳐졌고, 미국의 무역균형이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1985년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총량보다 아세아 쪽에 대한 무역총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분기점이 1985년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균형이 동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경제블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유교문화권 안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은 그 잠재능력이 이미 꽂피고 있습니다. 중국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시장경제체제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민족단위로 볼 때 아직도 분단된 채 그 귀한 자원을 국방과 경제로 양분해야만 될 그런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남쪽인 우리 한국은 경제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미 정치적 선진국으로 향진하고 있습니다

만, 복은 그 독특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경직성때문에 정치·경제적 개혁과 발전은 커녕, 체제위기속에서 불안정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냉전체제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면서 민족중심으로 또는 종교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강제력 때문에 억울하게 분단된 채 살아야만 했던 민족들은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써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일과 예멘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강제력 때문에 강제로 통합되었던 민족들은 반대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고슬라비아 사태라든지 구 소련의 해체과정에서 이러한 조짐을 뚜렷하게 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냉전체제로 인해서 분단되어서는 안되는, 통일되어야만 하는 민족들이 냉전체제 해체과정에서 합쳐지고 있는데 유독 한반도만은 아직도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구미 문명권 중에서도 유교문화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역사 흐름속에서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외적인 현상은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세계사적 큰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오래 견디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한 몇년 됐습니다만, 막스 싱거(Max Singer)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분석해서 21세기 중반이후 세계 8대 부유국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8대 부유국 가운데 2등이 한반도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통일된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1등은 일본입니다. 그다음 세번째가 미국, 네번째가 독일, 다섯번째가 프랑스, 여섯번째가 이태리, 일곱번째가 영국, 그리고 마지막 여덟번째가 소련입니다. 그분의 *A Passage to the Human World*라는 책은 '89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 때는 소련이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북아지역의 일본, 한반도가 이렇게 1, 2등 할 정도

로 높은 수준의 경제부유국이 된다고 막스 싱거 박사가 예측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반도라고 하면서 통일된 경우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이 것은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 맞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상태에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신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걸고 김영삼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냉전이후 시대를 열기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영삼 정부의 새로운 개혁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80년대 우리 사회 일부에 풍미했던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좌절됐다고 하는 최근의 경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실제로 좌절되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역사적으로 요청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윗물 맑기 운동, 다시말해 위로부터의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정단계를 거치면서 제도개혁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세번째 단계로 들어서려면 아래물 맑기운동, 즉 국민운동과 접합이 돼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윗물 맑기운동이 사정과 제도개혁과 더불어 총체적 개혁으로 나아갈 때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성공의 기초위에서 통일역량은 비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지표 4가지 가운데 첫번째는 정치적인 개혁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경제적인 개혁에 관한 지표이며, 세 번째가 사회적인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가지 개혁의

성공을 통해 마지막이 통일된 조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역량의 강화는 국내개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개혁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정부는 단계론적 통일론, 그리고 3기조론을 중심으로 평화시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화해협력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단계를 지나고, 마침내 1민족 1국가의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3기조는 국민합의, 공존공영, 그리고 민족복리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부는 통일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이와같은 평화적인 상태에서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통일정책이 핵문제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핵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핵우선 해결의 원칙, 둘째는 핵문제 해결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평화와 대화의 원칙, 그리고 세번째는 핵문제를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한다고 하는 국제공조의 원칙, 그리고 네번째는 북한의 핵지연전술을 저지한다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오늘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원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문제를 오늘까지 카드화해서 끌고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 냉전해체 과정에서 파생된 국제적 고립과, 그것에 유기적으로 연관된 경제적 곤경—이것이 체제의 위협을 가져오고, 이 체제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북한 당국은 인식

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북한이 어떻게 미국같이 큰 나라를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미국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 북한당국은 면밀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탈냉전 이후에 미국은 global hegemony strategy로서 핵비확산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북한은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NPT탈퇴선언 이후 오늘까지 그들은 핵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에 대한 정책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있는 한반도 보다도 안전합니다. 핵없는 통일은 핵있는 통일보다도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문제와 관계되는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남북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며, 또한 남북사이의 다양한 경제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이와같은 대통령 말씀을 적극 구현·실천하는 차원에서 우선 현재 진행중인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토의를 마무리 짓고, 특사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사교환 문제를 제 4 차 실무대표접촉(11.4)에서 매듭짓고, 11월중에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위급의 의사

가 원활히 소통됨으로써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사이의 현안 문제들이 타결되고 평화통일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그들의 체제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에 더욱 성의있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이행은 물론 서울·평양간 상주연락대표부 설치같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북한측은 하루빨리 핵무기개발 의혹의 어두운 장막을 거두어 올리고 남북대화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는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로 부터 냉엄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북한당국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이 통일되어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면, 한국은 유교문명권의 핵심지역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극동아닌 본동(本東)의 한가운데서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러한 웅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릴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목 차

I. 북한의 군사 및 핵문제.....	3
1. 북한의 최근 핵개발 프로그램 .....	5
2.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제관점.....	10
3. 북한의 핵과 국제원자력기구 .....	16
4. 북한의 새로운 핵위협 .....	25
5. 북한의 해군력과 그 전망.....	29
6. 북한·이스라엘간의 운산광산 매입상담 .....	34
II. 재래식 군축문제 .....	41
1. 재래식 군축에서 겸증의 제문제.....	43
2.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조약 부속의정서 .....	50
3.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조약.....	90
4. 최근의 미 군사 전략변화.....	98
III. 통일독일의 제문제.....	103
1. 독일 통일과정의 제문제.....	105
2. 통독후 구동독지역의 청소년문제 .....	111
3. 통독후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 .....	117
4. 동독경제 개발계획의 부재에서 파행하는 문제점들	133
〈참고자료〉	
1. Samul P. Huntington 교수의 “문명간의 갈등”...	143
2. Jeane J. Kirpatrick의 “문명간의 갈등”에 대한 반론...	166



## I. 북한의 군사 및 핵문제



## Special Report —————

### 북한의 최근 핵개발 프로그램

#### 【1】

1992년 3월 중순경, 모스크바에서 공개된 구 소련 KGB의 1990년 2월 22일자 비밀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1990년 초에 핵무기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이 직접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무기 개발계획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확보와 함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첫번째의 원폭장치는 영변의 핵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로서 북한은 이 원폭장치에 대한 실험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핵무기 생산사실을 세계여론과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 은폐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 문서는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 나타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캬자흐스탄’에 있는 핵무기 실험장을 이용해 그들의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을 러시아측에서 거절한 직후에 나왔

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들의 핵실험을 구소련이 행한 핵실험으로 해줄 것을 고집하였다.

1992년에 들어 북한은 군사적 핵개발계획중에 순수한 군사적분야 특히 무기조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62년 6월 이후에 북한은 영변에 있는 '빌딩500'으로 이름붙여진 지하시설물에 대해, 특히 시설물의 요새화, 위장의 강화, 방어망의 구축 등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2년 '빌딩500' 내부 및 주위에서 보여진 이러한 움직임은 이 건물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을만큼 더욱 강화되었었다. 사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팀이 '빌딩500'이라고 불리우는 이 건물에 접근을 요청했을때 북한이 핵환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이 문서와 여타 관련 정보를 기초로하여, 한 영국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실질적으로 4~6개의 핵폭탄을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험용 핵폭발장치 수준에 있으며 1996~97년에 가서는 적어도 한개의 완전한 1,500Km 사정거리의 지대지미사일의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또한 1993년 3월에 발표된 몇가지 보고서 (앞서 말한 KGB 문서에서 나타난)는 북한이 첫번째 원폭장치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6~7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는데 의견을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1991년 후반, 북한의 고위급 귀순자들이 폭로한 '북한이 1993년까지는 년간 3~5개의 소규모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첨보를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또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1993년 5월 31일 북한이 자체 개발한 SCUD-B (사정거리 320~340Km, 탄두 1,000Kg), SCUD-C(사정거리 500Km, 탄두 1,000Kg), SCUD-D(사정

거리 1,000Km, 탄두 1,000Kg)를 포함한 모든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행했으며 1992년 봄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사정거리 1,300Km의 최신형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 미사일의 이란에 대한 판매는 북한, 이란간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공동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다.

## 【2】

북한과 이란은 공동핵개발계획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한 바 있다. 1992년 가을에 들어서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공동개발계획 추진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의 첫단계로서 북한은 SCUD 미사일을 대량으로 긴급히 이란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220기의 SCUD 미사일이 1992년 11월 이란의 ‘반다르 암바스’ 항에 도착하였으며 1992년 말에는 1,000Km 사정거리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1호의 초기형 모델이 극비리에 이란에 제공되었다.

이후 북한-이란간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발생하였다. 즉 1992년 12월초 북한 부총리 김달현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여 상호간에 장기적인 전략협조를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 각서는 이란측의 소식통에 의하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의 개발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협정’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이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보유한 동구권 무기 특히 항공기 및 미사일의 관리유지 체제의 개발에 대한 북한의 원조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 이란간의 양해각서에는 핵무기의 공동개발과 화학 및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세대 미사일의 공동개발을 위해 이란은 매년 북한에 5억달러를 제공하며 북한은 이란

이 ‘이스파한’과 ‘셈난’에 미사일 생산라인을 건설하는데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노동 1호 미사일의 실험발사는 이란내에서 행해지며 장소는 ‘샤루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란에 대해 몇 개의 핵무기의 판매와 함께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핵연료재처리 시설을 제공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지원하에 이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단기간 긴급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도 및 항법장치는 독일회사로 부터 구입하며 미사일에 필요한 서방의 전자시스템문제는 북한, 이란간의 미사일 공동개발계획에 대해 리비아의 협력을 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로써 북한, 이란은 트리폴리의 ‘알파타’ 탄도 미사일계획을 이용하고 리비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회사와 기술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리아는 북한, 이란이 공동개발한 지대지미사일의 고객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란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동 1호 미사일은 사정거리 1,300Km, 장착 가능한 핵 또는 화학탄두 중량 800Kg으로 개량되었다. 이밖에 북한-이란간의 미사일 공동개발계획에는 중국제 M-11 미사일(사정거리 420Km, 탄착오차 1,500m, 탄두 400Kg)의 개량형 생산시설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1993년 3월말,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1호의 최신 개량형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 즉시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상당수를 이란에 선적하였다. 이란은 이 중 10기를 4월말에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3월 중순경에 노동 1호의 최신 개량형의 개발이 완료될 즈음에 북한측은 이란에 대해 공동개발계획의 다음 단계로 들어

갈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따라 이란측은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21명의 군사 및 과학분야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3월 28일 북한에 파견하였다. 동 대표단은 노동 1호 미사일이 이란으로 선적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동 1호 개발계획을 점검하였다. 이후 노동 1호 미사일은 다양한 형태의 고정 및 이동발사대와 함께 이란으로 반출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노동 1호 미사일 생산의 초기단계에 참여한 주로 이란 방위산업조직 및 육군 미사일 부대에서 온 이란측 전문가들이 남아서 미사일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993년말 이전에 미사일 반출과 함께 이란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미 하원산하 공화당연구위원회의 보고서, “Up-Date on the Iranian-North Korean Nuclear Program”('93. 7. 14) –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제관점

### 【1】

지난 2월, 북한은 김정일의 5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16만 송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장미와 다른 여러가지 꽃들로 시내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친애하는 동지” 김정일의 생일행사의 호화로움도 지금 북한을 덮고있는 음울한 분위기를 걷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외채의 부담과 국제적인 고립이라는 상황에서 북한은 급격한 수출감소, 국민생활수준의 저하라는 내부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밀한 핵무기 개발문제를 두고 UN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까지도 안고있는 것이다.

### 【2】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생일행사의 절정으로서 김정일의 중국 공식방문을 희망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비공식방문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 3월초로 예정되었던 중국방문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서 인정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의 이번 방문계획은 중국이 김정일의 국가원수로서의 방문자격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얼마전까지 그들이 치른 개인승배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에 조심스러워진 중국은 왕조적인 승계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스타일의 개인승배에 대해 공공연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유일하게 남은 그들의 우방으로부터 면박을 당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 중국관계는 중국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시장 경제로의 개혁과 지나치게 공세적인 외교정책노선의 수정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서부터 냉각되어 왔다.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대북한 수출에 대한 대금결제를 경화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외채상환 불이행 사실 때문에 (한국측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이래 67억달러 규모) 새로운 경화조달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1990년에 18.5억 달러에 달하던 대외교역규모가 1992년에 이르러 10억달러 규모로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사실과 복합되어 있다. 일본측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1992년도에 5% 후퇴하였으며 이것은 연 4년째 계속되는 경기후퇴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 중국관계 냉각, 경제적인 문제의 대두 등은 최근 국제원자력 기구와의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마찰에 비하면 오히려 덜 까다로운 문제이다.

### 【3】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는 한달간의 유예를 주면서 북

한이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시키는 불이익을 받든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특별사찰이란 사찰대상국이 동의한 지역에 국한된 사찰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가 임의로 정한 지역에 대한 사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의는 북한이 핵무기생산의 획기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한·미 양국 관리들의 주장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2월 24일, 미CIA 제임스 울시 국장은 미상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이미 핵폭탄 1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정보보고를 인용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저수준을 넘어서는 원료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원폭을 적재할 수 있는 100Km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북한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고위관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 관리들은 북한이 1~2년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자체사찰팀이 수집한 자료 및 샘플과 북한측이 제출한 보고서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월 24일의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36년 역사동안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내 특별사찰대상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변에 있는 소련제 2메가와트급 실험용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의 연료봉은 한국과 서방측 전문가에 따르면 수차례 걸쳐 재처리 되었으며 이는 이 연료봉이 대체된 적이 없다고 하는 북한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사용후에 또는 폐손된 연료봉의 대체는 핵무기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특히 영변지역근처에 있는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설에 대한 사찰을 통해 북한이 얼마만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측 보고서에는 재처리 시설에 관한 것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의 접근도 제지 당했었다.

특히, 한국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영변지역내에 확장중에 있는 방사화학연구소 건물로서 이곳은 플라토늄이 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다. 한국측 관리들은 북한측이 동위원소연구소 및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관련시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누락시킨 점에도 의혹을 갖고있다.

일부 한국관리들은 북한이 또 다른 2기의 원자로 (영변지역의 50MW급 및 태천지역의 200MW급)를 1996년까지 완공시킬 때, 북한은 매년 260Kg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한국측은 북한이 이러한 핵무기원료 획득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측이 우려하는 또 한가지 사실은 북한의 핵능력 보유가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 【4】

2월 21일, 북한의 원자력공업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말하는 북한측 보고서와 실제 사찰내용과의 차이가 “우리측의 해당시설 운용과 연구활동의 특수성을 간과한 사찰결과를 기초로 내린 출속한 결론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언급한 두 곳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핵과는 관련없는 군사시설이며 그러므로 사찰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러시아 및 주쿠바 대사관 등 10여개 북한대사관은 한국과 미국당국이 북한 군사시설의 공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2월 21일자 노동신문은 특별사찰을 위해 북한의 주권이 침해된다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북한이 결코 국제원자력기구의 무제한적인 사찰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교착상태는 지난해 조인된 남북간의 비핵선언에 규정된 상호사찰의 합의가능성을 높일지도 모른다고 한국측 분석가들은 보고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상호사찰 합의는 북한측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일 뿐더러 북한측으로 하여금 한국내 군사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라크의 경우 처럼 결국은 UN안보리가 구성한 사찰팀의 완전히 자유스러운 사찰활동을 수용하게끔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1991년 한·소 관계가 정상화 된 이후에 겪어온 많은 외교적 패배에 뒤이어 또다시 이러한 수모를 견뎌내기는 힘들것이다.

## 【5】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합의점 도출이라는 방안에 응할 것인가는 한국의 신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영삼정부의 신내각 구성에서 통일부총리와 외무장관에 북한 체제의 움직임에 대해 소상히 알고있는 학자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남북화해의 시발로서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던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김영삼정부는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 같은 다른 문제의 진전없이는 어떤 성급한 대북접근도 삼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간의 통신과 여행문제같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삼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는 달리 대북관계에서 보다 현실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핵무장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이 나누어져 있다. 강경파, 주로 안보 및 국방관련 부서에서는 대북교역 중단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폐르시아만 전쟁이후의 이라크 경우처럼 북한을 국제적 비난의 표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초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노정권하에서 주로 외교 및 청와대 비서진들이 주축이 된 온건파들은 대북교역을 증가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 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로써 북한의 강경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강·온 그룹들은 국제원자력 기구나 UN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데는 노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북압력을 가하려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북도중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개정을 언급한 것도 러시아의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 조약상에는 북한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러시아는 지체없이 자동적으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 “The last bunk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3. 3. 11) —

## 북한의 핵과 국제원자력기구

### 【1】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기본적인 흑백사진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많지않다. 건설중인 핵저장시설이나 흙과 관목, 나무로 가려진 주변의 옛건물 등이 유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물론 나무들은 위장용으로 쓰인 죽은 나무들인 것도 사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인공위성 촬영사진들은 미고위관리들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둘이킬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 중의 일부일 뿐이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밝혀진 것은 북한이 의심스러운 핵폐기장소를 흙으로 은폐하였으며 위장건물을 건설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미 관리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제사찰팀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22일, ‘빈’에서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등의 국가들도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리에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러한 증거자료가 공개된 것은 증거사진 자체

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이다. CIA는 1976년 이후, 북한에 관한 위성촬영사진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 미국의 위성첩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드러날지도 모를 이러한 증거사진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위성촬영사진은 핵 확산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진보된 기술중의 하나이다. 북한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또다른 탐지기술은 잘 세척된 핵폐기물 용기에 서도 동위원소의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의 분석실험 기법 등이다.

위성사진에서 드러난 증거와 과학적 자료들을 뒷바침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핵원료 재처리 과정과 관련된 시설운용기록을 변조했다는 징후들이다.

북한은 어떠한 과오도 시인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구에 대한 거부로 UN의 제재를 받게될 처지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비핵확산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미국측이 위성사진을 전례없이 공개한 것은 민감한 정보를 국제적인 핵감시 기구와 공유하겠다는 정보관계자들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협조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근절시키겠다는 공약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과도 같은 것이다.

CIA측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국무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증거사진을 공개 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입장은 당시 CIA 로버트 제이츠 국장과 백악관 당국에 의해 번복되었다. 이는 이러한 증거자

료의 공개유보가 핵개발문제에 북한측이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가 압력을 넣는데 장애요소로 작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 〔2〕

북한은 1992년 1월 북한이 비핵확산 조약을 준수할 경우, 대북교역을 확대하겠다는 미국, 중국, 일본의 시사가 있은 후에 그들이 주장하는 ‘핵발전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는 6곳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하였으며 북한당국은 사찰팀에게 90g의 플루토늄을 1990년에 파손된 원자로의 연료에서 추출한바 있으며 이는 순수한 과학실험용으로 이용 되었을 뿐이라고 알렸었다. 이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인도된 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부설연구소와 몇몇 국가의 연구기관에 분석 의뢰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은 영변의 연구소 당국자들에게 1990년에 핵연료 재처리과정에서 추출된 핵폐기물 샘플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영변연구소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마지못해 폐기탱크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절단하여 그곳에 저장된 고농도의 방사성 액체를 추출도록 하였다. 후에 북한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작업참여자들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은 자체분석결과 북한이 제출한 핵폐기물과 플루토늄 각각에 포함된 2가지 동위원소 즉 방사성의 ‘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플라토늄 239와 240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핵폐기물과 플루토늄이 별도의 연료 재처리과정에서 각각 추출된 것을 의미하며 이 핵폐기물과 플루토늄이 동일

한 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왔다는 북한측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핵폐기물이라는 한쪽과 플루토늄이라는 한쪽이 서로 짹이 맞지 않은 것은 두개의 각각의 짹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국제원자력기구의 Hans Blix사무총장은 말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불일치가 북한의 핵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수’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 【3】

이러한 불일치가 나타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은 북한이 일부 플라토늄의 생산에 대해 감추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시된 것 이외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물질의 추가 샘플채취에 대한 북한측의 허락을 얻어놓고 있으며 샘플채취는 북한의 ‘방사화학 연구소’에 있는 플루토늄 저장탱크 내부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북한은 사찰에 대비해 설비를 세척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찰팀은 설비의 내부홀 등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도 찾아낼 수 있는 민감한 감마선 탐지기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목표는 채취된 샘플로부터 플루토늄 241과 아메리슘이라는 두가지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있다. 이 동위원소는 핵연료가 재처리 될 때 분리된다. 정상적인 방사능 붕괴과정에서 첫번째의 동위원소가 두번째 동위원소로 바뀌는데 소요기간은 일정하다. 즉 14년간에 걸쳐 50%의 비율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플루토늄 샘플내에 있는 아메리슘의 질량을 통해서 얼마전에 플루토늄이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온 샘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소재 맥글란 연구소를 포함한 몇개 국가의 연구소에 보내져 분석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을 당혹케 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러한 플루토늄 샘플의 추출시기가 1989, 1990, 1991년과 1992년 초기에 걸쳐서 각각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점이다. 이것은 핵연료 재처리과정이 단지 1990년에만 있었다는 북한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한 관리는 북한이 서방측 연구소의 분석 기법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를 예상치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들은 만일 북한이 그들이 보유한 주원자로부터 나온 핵연료를 3년동안 지속적으로 재처리 했다면 적어도 4개 정도의 기본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비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임스 울시 CIA국장도 지난 2월 의회증언을 통해 “북한이 적어도 한개의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분열성의 물질을 제조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 【4】

지난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원자력공업부 당국자가 미국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공조체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사찰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인사들이 미 정보관리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들은 오히려 대북한 핵사찰문제에 관해 지난 1년간 CIA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력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실망스러

운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 정보전문가들은 ‘브릭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고위관계자들에게 정기적인 현황보고를 해왔으며 이것은 1992년에 이루어진 첫번째 대북 핵사찰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CIA측은 처음에는 정보제공을 유보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보 획득원과 획득방법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한 자료들, 예를들면 외부연구소에서 행해진 실험결과나 북한의 원자로 운용기록 등과 같은 자료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해 가을, 북한이 제출한 샘플간의 동위원소 비율이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난후에야 미국도 국제원자력기구가 보유한 정보와의 교환이라는 조건없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한 미국관리는 정보공조체제가 숨바꼭질 놀이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감추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찾으며 미국은 곁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감춘것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플루토늄을 비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미국측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양만큼의 비축물질은 너무 쉽게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축물질 자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찰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비축물질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난 년말, CIA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 노무자들이 1991년 겨울에 영변의 핵연료 재처리에 사용되는 주건물과 핵폐기물이 저장된 것으로 믿어지는 한 건물 (빌딩 500으로

이름 붙여 지고 있다) 사이에 도량을 파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하였다. 미 정보관리들은 이 도량이 두 건물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를 매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에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사진 가운데는 ‘빌딩500’의 다양한 단계별 건설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진에서는 이 시설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창고 형태의 건물이 콘크리트 슬라브위에 놓여 있어 이 밑에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진에서 나타난 흙을 이 건물의 하층부 주변에 쌓아 올린 것도 하층부 시설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이 현지에 갔을 때, 북한 관리들은 창고 형태의 건물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IA는 위성사진을 통해 1992년 여름, 북한 노무자들이 1976년에 완성된 저장시설 바로 건너편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다급하게 건설하고 있는 것이 포착된 사실을 지난해 늦게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이 현지에 도착하기 며칠전에 옛시설들이 흙으로 덮여졌으며 그 위에 나무들이 황급히 심어진 사실도 포착되었다. 이 나무들은 사찰팀이 떠난 직후 고사하였다. 이 정보관리들은 북한이 사찰팀을 기만하여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시설에 저장된 샘플만 채취토록 함으로써 과거에 시설물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5】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은 이러한 기만행위가 1980년대 이

라크가 국제원자력기구를 상대로 그들의 핵개발계획을 은폐하기위해 사용했던 독창적인 기만방법과 비교해 볼 때,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의 위성사진 판독기술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요구한 전례가 없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핵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증이 없는 북한내의 지역에 대해 특별사찰을 고집하리라고는 북한이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브릭스’사무총장은 1992년 12월 사찰팀에게 의심스러운 핵폐기물 저장소 중의 하나에서 샘플채취가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두지역에 대한 ‘사찰요청’을 ‘사찰요구’로 바꾸는 등 강경하게 선회하였다.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브릭스’사무총장은 미국에 대해 위성사진을 2월에 개최될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에서 공개해 줄 것에 동의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전 미 국무차관 ‘아놀드 캔터’는 지난 1월, “우리는 위성사진을 통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의심스러운 북한지역에 대한 문제제기에 선도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캔터’ 전 차관은 또 그가 당시 CIA국장이던 ‘게이트’에게 여기에 반대하는 실무진들의 입장을 번복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게이트’국장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말하였다.

CIA ‘게이트’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따로 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단지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덧붙여 “정보차원의 해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다국적 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공약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이트’ 전 CIA국장과 ‘켄터’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CIA 측의 실무진들은 위성이 얼마나 훌륭하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숨기기 위해 교묘하게 흐려진 “전적으로 부적합한” 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 정보공개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보다 선명한 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이사회에 공개된 사진해상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약간 질을 떨어뜨리기는 하였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북한측 대표 윤호진은 이것은 위조된 것이며 브릭스 사무총장이 제3국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불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이 지체없이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강경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북한의 비핵확산조약 탈퇴선언으로 관계 악화는 그 절정에 올라섰다.

북한의 탈퇴선언의 효력은 6월 21일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따라 국제원자력기구측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러한 위기상황 타개를 돋기 위해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아직 그들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 영변지역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원자로가 완성 중이며 여기에서 연간 6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N. Korea and the Bomb : High-Tech Hide-and-Seek,” *The Washington Post* ('93.4. 27) —

## 북한의 새로운 핵 위협

### 【1】

최근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 온 북한문제 전문가 사이에서  
는 북한의 대형 원자로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50톤 규모  
의 우라늄을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로에 사용하는 연료의 교환이라는 구실하에 이루어지  
고 있는 이러한 연료의 용도변경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공식화 되는 시점인 6월12일 이후 몇주 또는 몇개월  
후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의 핵확산금  
지조약 탈퇴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  
우, 강경노선의 북한지도부는 6월 12일 이후에는 핵연료 찌  
꺼기에서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자유롭  
게 추출해내게 될 것이다.

50톤 규모의 우라늄은 2~3개정도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다. 그러나 시설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다르기  
는 하겠지만 제조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폭탄제조에는 수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최소한 몇 개 정도의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을 국제감시팀으로부터 은폐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

작년에야 비로소 착수된 대북 사찰은 3개월전 즉,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한 직전에 중단되었다. 북한은 수개월 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구를 거부해 오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핵무기 제조계획의 핵심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두 지역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계속해서 사찰을 고집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었다.

핵연료 재처리 과정은 여기에서 나온 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이러한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사찰 허락이나 정확한 재처리시기 파악등에 대해 의구심만 갖게 했을 뿐이다.

사실, 북한이 그들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사찰수용문제나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채취 등의 문제를 서방측과의 팽팽한 협상을 위한 흥정거리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 의심이 팽배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들 면전에 이 문제를 협상미끼로 내밀고 있다. 또한 그들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온 물질 일부가 없어진 사실과 이로인해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고 한 관리는 말하고 있다.

### 【3】

미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제일 가까운 우방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현재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영변의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게끔 압력을 넣고 있다.

최근 몇주동안 미행정부관리들은 만일 북한이 핵화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완전한 사찰을 수용한다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다. 사실 미국과 북한의 관리들은 5월 5일 워싱턴에서 만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갖게 될 고위급회담의 준비 작업을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관리들중에 일부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을 핵화산금지조약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관리들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국제사찰을 수용할 경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핵개발계획이 무산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계획이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 계획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다툼도 무릅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리스카시 장군은 지난 4월,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시도를 포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나온 가장 비관적인 견해중의 하나이다.

### 【4】

또한 최근의 북한동향을 어느 정보기관에서 평가한 것보다도 더 위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 리스카시 장군은 “북한이

총체적인 좌절감이나 내부적 불안의 겉잡을 수 없는 결과로서 대남공격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냉전체제식 인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과의 협상방법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당국 사이의 견해차이가 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 몇주동안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관리들 간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자주 있어 왔다. 특히 지난 몇주동안, UN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좌절시킬것인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UN의 제재에 동참할지도 확실치가 않다.

북한이 3월 12일, 그들의 주권보호를 이유로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 대북사찰은 중단되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3개 사찰팀이 북한내에 장치된 감시카메라의 필름교환을 위해 북한 입국을 신청하였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

— “North Korea Stirs New A-Arms fears,” *The New York Times* ('93.5.6) —

## 북한의 해군력과 그 전망

### 【1】

냉전체제의 종식이후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인 입장 즉, 군사정책, 군사력, 방위비 등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2년에 공개된 미 국방정보국의 한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오히려 지하시설 등의 구축을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을 요새화 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65% 이상을 평양선 이남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 해안지역은 순찰함과 해안포로써 방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해안방어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군사시설과 군수공장들은 견고하게 방비 또는 위장되거나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군시설들은 항공기와 대공포, 미사일 등으로 이중 삼중의 깊숙한 방어망을 구성, 보호하고 있다.

금년 1월에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이던 ‘로버트 리스카시’ 장군은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은 군사부분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지원 배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5~10년간과 비교해서 전 병과에 걸쳐 미미한 규모의 감축만이 이루어졌을뿐 거의 100만에 이르는

병력과 500만에 육박하는 예비병력을 위해 매년 10억달러의 군사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병력을 비무장지대 근처로 재배치하면서 대부분의 부대를 기계화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개전 초기 북한 해군의 주임무는 북한 특수부대가 한국 해안지역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상대측 항구내에 기뢰를 부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해군의 주력은 어뢰정, 순찰정, 순찰함, 대잠초계정, 고속공격정 등 의 소형 전투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순찰함

북한은 최소한 69척의 ‘차호’급 순찰정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이 함정은 갑판 중앙부에 다연발로 캇포를 장착함으로써 유사시에 지상군에 대한 화력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425톤 급의 ‘태장Ⅱ’ 대형순찰함을 연3~4척 비율로 건조하고 있으며 미 군당국에 의할것 같으면 이미 동급 함정의 보유대수는 8척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2개의 선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순찰함은 중국제 ‘해난’급 순찰함과 동일한 기능을 가졌으나 보다 넓고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더불어 대잠함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 상륙함

특수부대의 적진 침투 지원을 포함한 북한의 해상전투 교리상의 주요 임무 수행은 100척에 달하고 있는 ‘남포’급 고속 상륙정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남포’급 상륙정은 20~30명의 병력을 수송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체 중인 ‘송정’급 상륙정은 (일명‘황해’급) 더 많은 병력 수송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3척의 ‘공기부양’형(API-88) 상륙정이 포함되어 있다. 미 군당국은 현재 북한이 이 함정을 52척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다른 소식통은 70척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상륙정은 1980년 중반에 수출된 영국 BAe사의 민간용 수중익선을 개조한 것으로 작전반경 1100Km, 최고속도 70~75Km/h에 ‘남포’급 3~4배 되는 병력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송정’급에 이어 ‘송정Ⅱ’급 31척, ‘송정Ⅲ’급 26척 등의 개량형이 계속 건조되고 있으며 ‘송정Ⅲ’급은 매년 6~10척을 건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기타 함정

이밖에 다른 소형 함정으로서는 ‘육도Ⅱ’급 근해 소해정(60톤)과 섬유유리 재질로 건조된 근해 순찰정 TB 11PA와 TB 40A가 있으며, TB 11PA와 TB 40A는 1990년 자이레 해군에 20척이 수출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자체 건조한 90척을 포함한 150척의 어뢰정과 25mm와 37mm 기관포로 무장된 50척의 소형순찰정 및 대잠초계정도 보유하고 있다.

## 고속공격정

북한 해군은 미사일 적재 고속 공격정인 ‘소주’급(미사일 4기 탑재)과 ‘소홍’급(미사일 2기 탑재)의 건조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구 소련제 ‘Osa’급 고속 공격정의 확대형인 ‘소주’급은 매년 1~2척, 구 소련제 ‘Komar’의 개량형인 ‘소홍’급은 매년 2~3척 건조되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에 의하면 북한 해군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SS-N-2A Styx형 함대함 미사일을 적재한 39척의 고속 순찰정이다. 규모가 소형인 관계로 작전 반경이 근해로 한정되고 있지만 공격해 오는 상대측 함정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순찰정이 적재하고 있는 Styx형 함대함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5Km이며 레이다나 적외선 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 잠수함

‘리스카시’ 사령관에 의하면 북한 해군은 현재 디젤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알려진 것보다 2척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28척의 디젤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최근들어 매년 2, 3척의 중국제 ‘Romeo’급(Type 033)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잠수함 건조계획은 보유 척수가 30척에 이를 때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은 이밖에도 4척의 구소련제 Whiskey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들은 서해안 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소형잠수함은 서해안지역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당국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48척의 소형 잠수함을 건조 완료 하였으며 또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이 숫자는 55~60척에 이른다.

이밖에 또다른 형의 소형잠수함이 과거 수년간 지속적으로 건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볼때, 소형잠수함 선단은 7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군력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현재 해군의 전투교리는 소형공격정과 야간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함대함 미사일과 적외선 탐지장치의 발달 등으로 해상전투 수행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전투 교리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을 새로운 교리에 맞게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여건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재의 여건하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 소련이 취해오던 해상전술과 유사하게 어뢰정 및 미사일 적재함으로 타격 선단을 구성, 이를 중심으로 해상작전을 전개하는 것일 것이다. 즉, 12~16척의 동급함정으로 공격 선단을 구성, 직접적으로 한국 해안지역에 대한 단시간내의 기습공격을 가하거나 16~24척으로 구성된 상륙선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이다.

— “The Korean People’s Navy—Further Perspectives,”  
*Intelligence Review* ('93.7) —

## 북한·이스라엘간의 운산광산 매입상담

### 【1】

1992년 10월, 북한의 운산시 시당 건물에서 열린 북한과 이스라엘 관리간 회합에서의 공식 의제는 3억달러 규모의 운산금광 매도건이었다.

이러한 회합은 북한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다연발 로켓포를 공급하고 그들의 게릴라 요원을 훈련시켰던 과거 냉전체제 시절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운산금광의 매도상담은 비록 이스라엘이 실제 광산매입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측의 구미를 끌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즉,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란에 대한 북한의 첨단 미사일 장비 판매를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장비 판매의 자체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 즉, 현재 궁지에 몰린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있어 이스라엘의 협력문제에 대해 기꺼이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북한간의 믿기 어려운 동반관계가 비록 미국의 개입으로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즉, 지난달 클린턴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측에 대해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재고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나 이스라엘측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무엇인가 기대 할만한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속에서 북한과 은밀한 접촉을 계속하여 온 것이다.

## 【2】

이러한 운산금광 매각상담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이던 벤츠’국장은 뉴욕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한국 기업인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그는 북경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북한 관련사업을 대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업은 ‘벤츠’국장에게 이스라엘에의 운산금광 매입을 제의하였고, 다소 이상하게 들렸지만 이스라엘은 북한이 그들이 필요로 물품이나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면 매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제의를 이해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2년 1월, 이스라엘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한 이후에 이스라엘 투자가들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3】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스라엘은 운산금광 매입제의를 심사숙고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외무부 ‘벤츠’국장과 두 명의 지질학자를 포함한 일행이 북한의 운산지역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북한군 장성을 단장으로 한 북한측 대표단과 회합을 가졌고, 운산광산이 현재 부분적으로 채굴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측은 북한군 장성들이 김일성·김정일간의 권력이양 이후, 자기들이

축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매각대금을 착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북한내의 숙정 작업이 본격화 될 때, 3억달러를 가지고 피신할 생각인 것 같다.”라고 이 상담에 정통한 이스라엘 관리는 말하고 있다.

운산광산 매각상담이 북경에서, 또는 중개인을 통해 뉴욕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스라엘측은 매각상담을 믿을 수 없는 군부인사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통한 실무진을 상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측은 운산광산 매입 제의를 북한의 실질적인 의도 즉, 경제난국 타개에 대한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측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미끼라고 보게 되었다. 북경의 서방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운산광산에 대한 서구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한 바 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운산광산 매입문제를 몇몇 기업인에게 검토하게끔 하였으며 이중에는 재건설 프로젝트 전문이며 극동지역에 사업을 갖고있는 베일에 쌓인 기업인인 ‘샤울 아이젠버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 노하우와 최종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스커드 D형 미사일인 노동 1호를 이란에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번 상담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관심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 【4】

1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신형 스커드 미사일의 공급을 저지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보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북한은 이미 600Km 사정거리의 스커드 C 형 미사일을 시리아와 이란에 공급한 바 있으며 양국이 스커드 미사일 제조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로 부터는 스커드 C형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시리아가 핵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스커드 미사일에 핵 탄두가 장착되지 않는 한, 향후의 전쟁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실질적인 핵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커드 C형 미사일의 사정거리에서는 이스라엘이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란이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력 형평은 무너지게 된다.

북한은 경제원조의 대가로 미사일 판매자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천대의 트릭을 원한 것 외에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원조내용을 밝힌 것은 없다. 또 북한은 그들이 바라는 경제원조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측은 북한의 미사일 판매 중단으로 생기는 손실액을 기초로 평가한 원조규모를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상담제의가 보다 진지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작년 12월, 북한이 공식문서로서 ‘시몬 페레스’이스라엘 총리를 방북 초청하면서 부터이다. 동 초청 서한에서는 상담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면 양국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북한측의 제의에 냉담해 왔으며 그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요구 원조액수가 이스라엘이 미국으로 부터 받는 원조액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규모의 원조를 북한과 같은 국가에 준다는 것은 미국의 대 이스라엘 원조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5월 중순, ‘요시 베이린’이스라엘 외무차관이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피터 타노프’ 차관보와 만났을 때 재확인 되었다. 이스라엘은 북한과의 상담에 대해 미국측에 브리핑 하였으나, 미국측은 그만둘 것을 충고하였다. 타노프

차관보는 북한이 신뢰할 수 없고 현재 권력이양의 과도기적 국면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스라엘이 원조만 날릴 가능성 이 크다”고 말하며 성급하게 북한의 제의에 말려들지 말 것을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5】

이스라엘은 미국이 북한과의 상담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유중의 하나로써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방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러한 추측은 지난주에 미국이 북한의 핵 학산금지조약 탈퇴결정을 번복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UN에서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와의 회담을 발표함으로써 확인되었다.

북한이 핵학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을 번복하는 대가로 바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한반도에서의 미 군사력 감소이다. 만일 북한이 이스라엘로 부터 원조를 획득하게 된다면 북한의 대미협상의 매력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미국측이 북한정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보다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은 현재 북한과의 어떠한 쌍방간의 협상체결도 배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대북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간의 무기판매 루트를 차단시키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에 대해 배려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대북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북한, 미국간 3자협상을 통해 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이스라엘은 노동1호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미국은 핵학산금지 문제에 대해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북한은 트럭 등을 비롯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성사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얻게 될 대가는 큰 것이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적대국인 이란으로부터의 파멸적인 공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별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대와 보다 시중하게 몇차례의 회담을 더 가져볼만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 “The North Korean Connection,” *TIME*(’93. 6. 7) —



## II. 재래식 군축문제



# Special Report —————

## 在來式 軍縮에서 檢證의 諸問題

### 【1】

군축에 대한 검증은 기초자료에 대한 확인과 감축, 파기, 제거과정에 대한 확인 및 제한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제한에 대한 검증작업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이나 중거리 핵전력감축조약(INF)에서 나타난 핵에 대한 검증작업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럽재래식 군축조약(CFE)에서 볼 수 있듯이 재래식 군사력은 핵군사력에 비해 군사력 계산문제에 있어 단위 무기별로 개별화가 어렵고 양이 엄청나면서 반면 이동과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유럽재래식 군축조약상의 제한 또는 감축대상인 무기 및 장비, 군사활동 등의 범위가 어느 다른 핵감축조약에 있어서 제한 또는 감축대상인 무기 및 장비, 군사활동 범위보다 엄청나며 또 하나의 문제는 감시 자체가 미·소 양국간의 핵 무기만을 주대상으로 하던 핵의 검증문제보다 다자간 상호주의 적용이라는 어려움이다. 즉 미국측이 구 소련측에 부과하려고 하는 사찰체제의 엄격성을 미국의 우방국도 똑같이 수용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검증수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군사적 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군사적 중요도에 순위를 매기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대방 군사력의 어떤 특성이 군사적 중요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감시수단의 우선적 목표를 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조약상의 제한범위를 20%에서 30% 수준으로 벗어나는 정도를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인용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제한범위를 벗어난 군사력이 전진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의 변동에 대한 검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첫째, 군사시설 지역 또는 은폐 가능성이 큰 지역에 배치된 인원이나 장비의 주요품목에 대한 감시

둘째, 군사력의 철수, 감축, 재배치와 제거, 재수출, 파기, 해체 과정에 대한 감시

셋째, 이상과 같은 임무를 완수한 감시체제가 후속기간 동안에도 필요에 부응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검증능력의 극대화는 제한된 검증 자원을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군사력 변동에 집중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대체로 검증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군사력의 규모, 배치, 그리고 위치의 변동이 있을 때나 군사력의 철수 또는 해체에 따른 재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익숙하지 못한 여전에서 검증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정 군사력 수준에 대한 검증보다 어려움이 큰 것이다.

## 【2】

유럽 재래식 군축조약의 검증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검증제도가 조약 성립 당시의 미·소 양국 체제라는 국제정치여건에서 달라진 정치적 군사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90년대 들어와서 동·서구권간의 정치적 장벽을 비롯한 모든 벽은 무너졌으며 러시아는 서구의 이웃으로 다가섬으로써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 이에 따라 폐쇄적이던 소련 및 동구권은 개방되었으며 심지어 군사에 관련된 정보들 조차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의 군사력은 재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대규모 지상군 부대의 인력구조와 대응태세는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이완되고 있다. 동구권의 군사력도 감축되었으며 과거 소련의 군사소요계획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던 군사전략도 독자적인 안보정책에 의거하여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국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였던 동독군은 통독으로 소멸되어 버렸다. 이러한 정치·군사환경의 변화속에서 NATO국들이 소련 및 동구권의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유지의 필요성은 사라졌으며 또한 군사력 운용계획도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경무장의 군사력을 국내 및 해외에 배치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 경우, 이러한 군사력이 유럽군축조약의 규제를 벗어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더우기 러시아의 자본주의화의 산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송과 통신부문의 발달은 러시아 군사력의 신속한 전진배치 능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조기경보의 시간적 여유를 상쇄시킬지도 모른다. 최근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열차선로의 서구구격화, 복선화, 도로망 정비등과 전화 및 컴퓨터 보급 등은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향후 예상되는 외부여건 변화로 사단규모의 군사활동을 제한하고 예비 군사력 동원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의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후반까지 유럽군축조약 이후의 군사적 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첫째는 투명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과거 바르샤바 기구가 가졌던 군사적 이점의 하나는 기밀성이었다. 반면, 동구의 군사계획 입안자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서방측 정보는 서방내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졌고 구체적인 자료까지 수반되었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공산체제 붕괴이후, 이러한 바르샤바 기구의 군사정보는 동구사회가 개방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의가 가능해지고 군사관련자료의 출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획득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조약규정을 기만하는 속임수도 어렵게 되었다. 즉 과거 바르샤바 기구의 전진지역이었던 동독,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공산정권 붕괴라는 가장 큰 정치적 변혁을 경험함으로써 조약규정에 대한 기만은 대외적인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더우기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환경변화에 따른 상호신뢰구축조치의 확대는 감시 및 검증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상호간 군사력에 대한 파악도를 높였다. 왜냐하면 부대의 형태, 규모, 위치의 변동 등을 추적하는 것을 정확히 감시하는데는 어려움이 항상 따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교환 채널의 확대로 군사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관찰수단이 방해받지 않도록 개선되고 군사행동의 공개화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새

로이 편성되거나 배치된 부대의 병력이나 성격에 대한 상호 불신을 불식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구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와해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전방지역의 개념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검증의 필요요건도 달라지게 되었다. 구 소련방이 나토에 대치하여 배치한 33개 사단규모의 병력이 동구권에서 해체되거나 철수 후에 러시아 지역 내에 재배치됨으로써 검증의 개념은 NATO와의 대치지역인 바르샤바기구 최전방 지역의 대규모 밀집 군사력에 대한 근접 정밀감시개념에서 과거 동구권지역에 대한 군사력 공백확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실제적으로 조약상 제한대상 무기에 대한 감시는 실전배치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급창이나 수송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 【4】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검증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감시대상의 군사력의 규모, 구조, 위치 등이 변경되었을때, 실제 보유한 제한대상 무기가 조약상의 보유상한을 넘지않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유상한선 준수를 확인하는 것에는 우선, 보유수량산정에 보유허용된 무기만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다른 단위부대나 다른 지역에 산재한 동일 무기품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량적으로 명시된 보유상한선이 조약이 적용되는 전지역이나 단위지역에서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무기품목의 생산이나 유통구조를 추적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대측 단위부대의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의 변동에 대한 정밀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때 과거의 대규모 정규사단 위주의 군사력 운용 시 이에대한 검증은 군사교범상의 편제에 의거한 보유인력

및 장비에 대한 감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추세는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다 소규모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성격이 덜한 군사력 운용을 계획에 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소규모적이며 현대화된 군사력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갈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군사력은 소규모화되고 유지비용을 절감하며 준비세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은 뚜렷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확립된 방어전략의 부재 속에 보다 방어적 성격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부분의 부대는 종전 형태를 유지한 채 약간의 새로운 형태의 부대운용을 시험해오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전례로 보아서 이것은 전원 현역으로 구성된 기동단위부대 보다는 예비부대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공식적인 군사력 비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예비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 품목들은 전쟁게임의 결과의 측정수단인 무기대비효과 계산에 사용되는 동일 무기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비역으로 대체된 러시아 군 사단급 부대의 보유장비에 대한 조약상의 제한한도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역사단에 대한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관찰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유럽군축조약이 전차, 포, 기타 중화기에 대해 집중적인 제한을 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약가입국들은 비정규 장비나 기타 경화기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것은 각국이 자국방위에 필요한 전력확보라는 측면과 개별무기에 대한 제한규정준수라는 측면을 조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각

조약당사국의 군사력 구성의 변동은 또 다른 검증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상대측 전투서열상에 새로운 단위부대가 나타났을 경우, 이것이 조약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조약규정에 대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우회적 위반을 교과서적으로 공식화하며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당사국이 이러한 상대측의 군사력 구조의 변동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반대로 자국방위의 수요충족을 위해 제한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의 제한 규정으로 어느정도 즉각 재협상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검증체제 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와같이 군사조약의 체결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 조약당사국이 상호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검증체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서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를 토의하고 불가피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동협의기구의 설립은 유럽군축조약의 결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Thomas J. Hirschfeld, “*Conventional Verification in a Changing Framework*” —

# Special Report

---

##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조약 부속의정서

### 제 2 장 一般的 義務

1. 각 조약 당사국은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이하 조약)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하여 본 의정서에 의거한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에 운용되는 무기 및 장비에 대해서는, 동 재래식 군사력의 소속 국가와 배치 지역의 주권 국가가 각각에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본 의정서의 해당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호송단은 사찰대상국의 책임하에 둔다.
  - 가. 사찰대상지역(또는 시설)에 동 지역 주권국 이외의 국가(이하 제3국)의 무기 및 장비만이 존재하고 또한 제3국만의 통제하에 있을 때, 호송단은 동 지역(또는 시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제3국 대표의 책임하에 둈다.

- 나. 사찰대상지역(또는 시설)에 제3국의 무기 및 장비 뿐만 아니라 동 지역 주권국의 무기 및 장비도 존재하고 있을 때 제3국의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동 지역의 주권국은 사찰대상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제3국 및 해당 지역 주권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동 지역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동 지역의 주권국은 사찰대상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킨다. 그러나 제3국에 소속된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사찰과 관련하여 제3국에 귀속될 권리와 의무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4. 사찰대상국과의 합의를 통해 제3국이 사용하는 구조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찰단이 출입을 요구하는 경우, 제3국은 사찰대상국과 협조하에 동 구조물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합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국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사찰과 관련하여 본 의정서가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사찰대상국과의 합의를 통해 제3국이 사용하는 구조물 및 시설은 제3국 대표가 호송단에 포함될 경우에만 사찰의 대상이 된다.
  6. 사찰단은 사찰시행국의 책임과 통제하에 둔다.
  7.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하여 사찰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사찰단이 어느 한 지역에 대해 동시에 사찰을 실시할 수 없다.
  8. 본 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단서로 사찰시행국은 사찰이 실시될 사찰대상국의 영역내에서의 각 사찰단의 체류기간과 이 기간동안에 사찰을 실시할 지역수 및 대상지역을 결정한다.
  9. 사찰단의 사찰실시전 입국지점까지의 소요경비와 사찰 실시후 출국지점통과 이후의 소요경비는 사찰시행국의

부담으로 한다.

10. 각 당사국은 각 특정기간 동안에 할당된 「소극적 수용 사찰횟수」<sup>1)</sup>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의정서 제7 항 및 제8항에 의거한 사찰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각 특정기간이란 조약의 효력 발생후 120일간의 기본감축 확인기간, 이후 3년간의 해당무기 및 장비의 감축기간, 이후 120일간의 잔여분 감축확인 기간을 의미한다. 각 당사국에 할당된 각 특정기간 동안의 소극적 수용 사찰 횟수는 각 당사국내에 위치한 검증 대상물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감축장소 및 확인장소는 검증 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가. 조약효력 발생후 첫 120일간 검증의 대상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찰횟수는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5장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통보한 검증 대상물의 20%에 해당되도록 한다.
  - 나. 이후 3년의 감축기간동안 매년 사찰횟수는 당사국이 통보한 동 검증대상물의 10%씩에 해당되도록 한다.
  - 다. 3년의 감축기간 경과후 첫 120일동안의 사찰횟수는 당사국이 통보한 동 검증대상물의 20%에 해당되도록 한다.
  - 라. 이후 조약의 효력기간 동안 매년 사찰횟수는 당사국이 통보한 동 검증대상물의 15%씩에 해당되도록 한다.
11. 조약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영토를 보유한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특별사찰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 가. 조약의 효력발생이후의 기본감축 확인기간 동안, 무기 및 장비의 감축 기간중 매년, 그리고 잔여분의 감

---

1) 「소극적 수용 사찰횟수」는 검증대상물이 위치한 장소에서 특정기간동안 사찰대상국이 수용하여야 할 본 의정서 제7장에 의거한 검증대상물에 대한 총사찰횟수를 의미한다.

- 축 확인기간동안에 사찰대상국의 검증대상물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제3국에 속하는 검증대상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서로 기본사찰횟수의 15% 한도내,
- 나. 참여분의 확인기간 이후 조약 만료일까지는 사찰대상국의 검증대상물이 있는 지역과 함께 제3국에 속하는 검증대상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사찰횟수의 23% 한도내에서 특별사찰을 수용한다.
12. 본 장의 다른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7항에 의거한 검증대상물에 대해 매년 최소한 1회의 검찰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또한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에 영토를 보유한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8장에 의거하여 「특정지역」<sup>2)</sup>에 대해 매년 최소한 1회의 사찰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13. 본 의정서 제7장에 의거한 1개 사찰지역의 1개 검증대상물에 대한 사찰은 검증 대상을 보유한 국가의 소극적 수용사찰 1회로 계산한다.
14. 본 의정서 제7장에 의거한 특정기간동안의 사찰 대상국의 영토에 대한 사찰에 있어서 제3국에 속하는 검증대상물에 대해 실시될 사찰횟수의 비율은 사찰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총 검증 대상물중에 제3국이 보유한 검증대상물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5. 본 의정서 제7장에 의거한 특정기간내에 각 당사국의 영토내의 검증대상물에 대해 실시되는 사찰횟수는 각 당사국내에 있는 검증 대상물의 총 수치에 대한 비율로

---

2) 「특정지역」은 본 의정서 제7장, 제9장, 제10장에 의거한 사찰이 실시된 지역을 제외하고 조약이 적용되는 각 당사국의 영토로서 본 의정서 제8장에 의거한 특별사찰이 실시될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지역은 65km<sup>2</sup>를 넘지못하며 지역내의 어느 두지점 간의 거리가 16k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계산한다.

16. 본 의정서 제8장에 의거한 1개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은 사찰이 실시될 대상국에 할당된 「소극적특별사찰」<sup>3)</sup> 1회 및, 소극적 수용 사찰 1회로 계산한다.
17. 호송단과 사찰단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사찰단의 사찰대상국내에서의 체제기간은 총 10일 한도내에서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총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1개 검증 대상물에 대해서 또는 특정지역내에서 첫 번째 사찰의 경우, 48시간
  - 나. 이후 1개 검증 대상물마다 또는 특정지역마다 계속적인 사찰의 경우, 각 36시간
18. 본 제17장의 제한을 단서로,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하여 사찰을 실시하는 사찰단은 「지정된 장소」<sup>4)</sup>에서의 체류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에서의 체류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9. 사찰대상국은 사찰단이 다음 사찰대상지역으로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한 사찰대상지역에서의 사찰종료와 다음 사찰대상지역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거나, 사찰이 실시되는 사찰대상국 영토내에서의 마지막 사찰의

---

3) 「소극적특별사찰횟수」는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권당사국이 본 의정서 제8장에 의거하여 특정지역내에서 특정기간동안 수용하여야 할 특별사찰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4) 「지정된 장소」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검증 대상물이 위치한 시설이나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도해된 장소를 의미한다. 지정된 장소는 전차, 장갑차, 포, 전투용 헬기, 전투기, 재분류된 전투가능훈련기, 병력수송용 장갑차류, 보병전투용 장갑차류, 가교부설용 장갑차류 등이 상존하거나 수시로 주둔하는 사격장, 훈련소, 유지 및 저장시설, 헬기착륙장 철도집하장 등을 포함한 부설지역이나 인공 및 자연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종료와 사찰단이 출국지점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은 사찰단의 사찰대상국의 영토내 체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0.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7장과 제8장에 의거하여 사찰을 실시할 2개 이하의 사찰단이나 또는 특정기간 동안 사찰을 받아야 할 동국 영토상의 총 검증 대상물의 2%에 해당하는 수 이하의 사찰단중에 어느쪽이든 많은 숫자의 사찰단이 동시에 조약이 적용되는 각 당사국의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여야 한다.
21.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7장과 제8장에 의거하여 각 당사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2개 이하의 사찰단이나 또는 특정기간동안 사찰을 받아야 할 총 검증대상물의 2%에 해당하는 수 이하의 사찰단중에 어느 쪽이든 많은 숫자의 사찰단을 수용하여야 한다.
22. 본 장의 제20항 및 제2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군사관구를 포함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하여 동 군사관구중 어느 하나에서 사찰을 실시할 2개 이하의 사찰단을 동시에 영토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23. 어느 사찰대상국도 동일 국가로부터 자국에 할당된 소극적 수용 사찰횟수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한 사찰을 동일년도에 수용 할 의무는 없다.
24.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조약적용 지역에서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동일국가군에 속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한 사찰을 매년 5회 이상은 실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찰은 사찰을 수용하는 국가의 소극적 수용사찰횟수로 계산한다. 동일 국가군중에 특정 당사국에 대한

- 사찰횟수 할당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국가군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적극적 사찰 실시횟수」<sup>5)</sup>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A. 기본적 감축 확인 기간중에는 ; 조약 서명후 120일이내
  - B. 감축기간중에 첫 1년간은 ; 조약효력발생후 60일이내
  - C. 이후 감축기간의 매년, 잔여분 감축기간, 잔여기간중에는 ; 각 기간의 이전 1월 15일까지

### 제 3 장 査察 준비단계의 要件

1. 조약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찰은 본 장 제3항에서 제7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찰다님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찰요원은 사찰시행 또는 기타 당사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3. 조약의 서명후 90일이내에 각 당사국은 내정된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의 명단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번호와 함께 다른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내정된 사찰요원은 400명을 수송요원은 6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제출한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 명단을 검토하고 명단접수 30일 이내에 제척을 바라는 요원의 명단을 해당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본 장 제7항을 단서로, 상기 제4항 규정에 따라 기간내 제척을 요구받지 아니한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은 본 장 제8항에 따라 비자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을 대상으로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

5) 「적극적 사찰 실시횟수」는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하여 각 당사국이 특정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찰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6. 각 당사국은 조약의 발효후 1개월 이내에는 제출한 명단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 이후에는 각 당사국은 6개월마다 사찰단 및 수송단 요원의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 장 제3장에 규정된 총원숫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출된 추가명단은 본 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서 검토한다.
7.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제출한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 명단으로부터 특정인의 제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8. 사찰이 실시될 영토상의 당사국은 본 장 제5항에 따라 접수된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에게 사찰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국 영토내에 입국 및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 및 기타서류를 본 의정서 관계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비자 및 기타 필요서류는 다음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가. 명단 접수후 또는 명단의 변경후 30일이내 ;  
이 경우, 비자의 효력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사찰단 및 수송단의 출입국 지점 도착후 1시간이내 ;  
이 경우, 비자의 효력은 상기 요원들이 사찰활동이 지속되는 동안이어야 한다.
9. 조약의 서명후 90일이내에 각 당사국은 여타 당사국에 대해 사찰이 실시될 당사국의 영토에 출입하며 사찰에 필요한 요원 및 장비를 수송할 자국의 수송수단중에 상시적으로 출입허가가 필요한 대상의 숫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정된 출입국지점까지 또는 출입국지점으로부터의 교통로는 기존의 국제항로나 양 당사국간의 외교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찰요원은 항공로선이 설정된 출입국지점까지 민간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항의 출입수속에 필요한 수송수단의 수량 통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정보교환에 관한 부속의정서』 제5장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통보서에 각 당사국은 검증대상물이 있는 각 대상 지역을 고려한 사찰단의 출입국지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기 출입국 지점은 지상의 국경 통과지점, 공항, 항구로 할 수 있으며 사찰시행국의 수송수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 각 사찰대상지역에 관련된 출입국지점으로서 최소한 1개 공항이 통보되어야 한다. 각 사찰대상지역에 관련되어 통보된 출입국지점의 위치는 본 의정서 제7장 제8항에 명기된 시간내에 사찰대상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한다.
11. 조약의 서명후 90일이내에 각 당사국은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사찰단이 사용할 유럽안보협의회의 공식언어를 여타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장 査察意思의 通報

1. 사찰시행국은 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사찰을 실시할 의사를 사찰대상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찰대상국에 있는 제3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사찰의 경우, 사찰시행국은 사찰대상국과 제3국에 대하여 이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국에 의해 실시된 확인절차 및 감축과정에 대한 사찰의 경우도 사찰시행국은 사찰대상국과 제3국에 대하여 이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찰에 있어서, 상기 한 통보는 조약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찰이 실시될 사찰대상국의 영토내의 출입국지점에 사찰단이 도착할 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한 36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이용할 출입국지점

- 나. 출입국지점까지의 도착예정시간
  - 다. 출입국지점까지의 교통수단
  - 라. 첫번째 사찰이 본 의정서 제7장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제8장에 의거한 것인지의 여부와 사찰이 도보, 육로, 차량, 헬기, 또는 복합적인 방법중에 어느 것에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
  - 마. 출입국지점의 도착시간과 첫번째 사찰대상지역 지정 간의 시간 간격
  - 바. 본 의정서 제3장 12항에 따라 지정된 언어중 사찰 단이 사용할 언어
  - 사. 본 의정서 제12장에 따라 준비될 사찰결과보고서에 사용할 언어
  - 아.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번호
  - 자. 예상 연속 사찰횟수
3. 본 의정서 제9장 및 제10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찰에 있어서, 상기의 통보는 조약 17조 규정에 따라 사찰이 실시될 사찰대상국의 영토내의 지정된 출입국 지점에 사찰팀이 도착할 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한 96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이용할 출입국 지점
  - 나. 출입국 지점의 도착예정시간
  - 다. 출입국 지점까지의 교통수단
  - 라. 감축 또는 확인지역에 대한 각각의 사찰에 있어서, 본 의정서 제9장 제3항 또는 제10항 제5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통지서 내용
  - 마. 본 의정서 제3장 12항에 의해 지정된 언어중에 사찰단이 사용할 언어
  - 바. 본 의정서 제12항에 따라 준비될 결과보고서에 사

## 용할 언어

- 사. 사찰요원 및 전송요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번호
4. 본 장 제1항에 의거하여 통보를 받은 당사국은 조약 제17조에 따라 3시간 이내에 통보를 접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 장의 각 규정을 단서로 사찰단이 본 장 제2항 B, 또는 제3항 B에 의거하여 통보한 출입국 지점과 도착예정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찰의사를 통보받은 사찰대상국은 그 즉시 통보서 사본을 조약 제17조에 따라 여타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6. 만일 사찰이 실시될 영토에 속하는 사찰대상국이 사찰단의 도착 예정시간에 사찰단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을 경우, 통보된 도착예정시간을 전후하여 2시간 범위 이내에서 동 국의 영토내로 사찰단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찰이 실시될 영토에 속하는 사찰대상국은 사찰시행국에 대해 처음의 통보가 송부된 후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도착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7. 만일 사찰단이 이미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본 장 제6항에 따라 협의 변경한 새로운 도착예정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체될 것을 알았을 경우, 사찰시행국은 본 장 제1항에 의거하여 통보한 당사국들에게 다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새로운 도착예정시간 :
-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통보한 도착예정시간이나 본 장 제6항에 따라 협의 변경된 새로운 도착예정시간을 6시간이상 초과할 수 없다.
- 나. 사찰시행국이 원할 경우에는 출입국 지점 도착과 첫 번째 사찰지역 지정장소 새로운 시간간격 :
8. 출입국 지점까지의 사찰단 수송에 비영리항공편을 이용

할 경우, 사찰시행단은 사찰을 실시할 영토가 속하는 사하는 사찰대상국의 영공 진입 예정시간보다 최소한 10시간 이전에 조약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찰대상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비행계획은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규정절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사찰시행국은 비행계획의 비고란에 상시적으로 출입허가가 필요한 숫자와 “조약 사찰수송항공기, 우선적 출입국 수속절차 요망”이라는 통지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사찰을 실시할 영토에 속하는 대상국은 본 장 제8장에 따라 기록된 비행계획의 접수이후 3시간이내에 비행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찰단이 예정된 도착시간에 출입국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5 장 出入國 지점 도착후 수속절차

1. 호송단은 사찰단과 수송단 요원의 출입국지점 도착시에 출영하여야 한다.
2. 사찰대상국과의 협정에 의해 출입국지점의 구내지역 및 부속물을 사용하는 사찰시행국은 호송단과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출입지역에서 사찰단을 수행할 연락관을 호송단에서 지명할 수 있다.
3. 출입국지점의 도착시간 및 귀환시간은 사찰단과 호송단 상호간에 합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사찰을 실시할 영토에 속하는 사찰대상국은 사찰단의 소화물, 장비 및 보급품이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되고 출입국 지점에서 신속한 수속이 이루어 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사찰시행국이 사찰대상국의 영역내로 반입하는 장비 및 보급품은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사찰단이 출입국 지점으로부터 사찰대상 지역으로 출발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 및 보급품에 대한 검사는 사찰 요원의 입회하에 호송단에 의해서 실시된다.

6. 만일 호송단이 검사과정에서 사찰단이 반입한 장비 또는 보급품의 어느 품목이 본 의정서가 규정한 사찰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본 의정서 제6장 제7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찰단은 동 품목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출입국 지점에 유치할 수 있다. 사찰시행국은 사찰대상국의 영토로부터 동 유치 장비 및 보급품을 재량에 따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 품목을 반입한 사찰단이 사찰대상국의 영토를 벗어날 시점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7. 만일 한 당사국이 출입국 지점에서 사찰단이 반입한 장비에 대한 검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동 당사국은 동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거나 사찰대상국의 협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 또는 건물이 있는 지정 지역에 대한 사찰 이전에 본 장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한 호송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8. 사찰단 및 수송단 요원이 사찰대상 국가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은 사찰대상국은 식사, 숙박, 업무지역, 수송 및 필요하다면 의료와 기타 유사시의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9. 사찰을 실시할 영토에 속하는 사찰대상국은 출입국 지점에서 사찰시행국의 교통수단에 대해 수용시설, 보안, 정비 및 연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6 장 査察施行에 따른 一般規則

1. 사찰단에는 사찰시행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 출신의 사찰요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본 의정서 제7장, 제8장, 제9장 및 제10장에 따라 실시되는 사찰의 경우, 사찰단은 최고 9명까지 구성될 수 있으며 3개까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조약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군사관구를 갖지 않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나 그러한 군사지역을 가진 당사국의 1개 군사지역에 대한 동시 사찰의 경우, 오직 1개 사찰단만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기타 사찰단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다.
3.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은 각각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사찰요원은 사찰을 실시할 사찰대상국의 영토내의 출입국 지점에 도착과 함께 각자의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며 동 출입국 지점을 통하여 사찰 대상국의 영역을 벗어남으로써 동 임무 수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수송요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면책권의 본질을 인식하고 사찰을 실시할 지역의 주권당사국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며 내정문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찰지역의 안정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이 이러한 법규나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본 의정서에 규정된 사찰활동에 관련된 기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알았을 경우, 사찰대상국은 사찰시행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찰시행국은 사찰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요원을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으로부터 제척시켜야 한다. 만일 해당요원이

사찰을 실시하는 국가의 영토내에 있을 경우, 사찰시행국은 즉각 해당요원을 동국의 영토로부터 퇴거시켜야 한다.

7. 사찰대상국은 출입국 지점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찰대상국의 영토를 벗어나기 위해 출입국 지점을 출발하는 시간 까지 사찰단 및 수송단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8. 호송단은 사찰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호송단은 재량에 따라 사찰단이 사찰을 실시할 사찰대상국의 영토내로 들어올 때부터 동 영토를 떠날 때까지 동 사찰단을 수행할 권리를 행사한다.
9. 사찰시행국은 사찰단 및 소사찰단이 본 의정서 제4장 제2항 F, 또는 제3항 E 규정에 의거하여 통보한 언어로써 호송단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찰대상국은 호송단이 동 언어로써 사찰단 및 소사찰단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찰요원과 호송요원은 기타 언어로도 소통할 수 있다.
10. 사찰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정보도 사찰시행국의 명시적 동의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11. 사찰요원은 사찰을 실시할 사찰대상국의 영토내에 체류하는 동안 사찰대상국이 제공하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동 영토내의 자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찰대상국은 사찰단과 소사찰단 상호간의 통신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사찰대상국은 각 사찰지역으로 향하거나 사찰지역에서 나오는, 또는 사찰지역간의 사찰단의 수송을 사찰 대상국이 선정한 교통수단과 교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사찰시행국은 사찰대상국이 선정한 교통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찰대상국은 가능할 경우, 이러한 변경요

- 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간에 합의가 될 경우, 사찰시행국은 자국의 육상 운송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3. 만일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찰요원이 사찰대상지역으로부터 사찰이 실시되는 사찰대상국 영토내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거나 출입국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찰단은 호송단에게 상기 이동에 대한 제반 채비를 위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호송단은 필요시에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사찰대상국은 사찰단이 사찰대상지역에서 장비 및 보급 품의 저장, 보고서 작성, 휴식, 식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사찰단은 사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특히 자체적인 지도나 도표 등을 반입할 수 있다. 사찰요원은 휴대용 야간투시장치, 쌍안경, 비디오카메라, 일반카메라, 속기용 녹음기, 녹음테이프, 손전등, 나침반, 소형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찰대상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호송단은 사찰요원이 반입한 장비를 관찰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 그러나 본 의정서 제5장 제5항에서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호송단의 동의를 얻은 장비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찰의 경우, 사찰단은 사찰을 실시할 지역을 지정할 때마다 동 사찰이 도보, 육상교통수단, 헬기 또는 복합적인 방법중에 어느 것에 의해서 실시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사찰대상국은 사찰대상지역에서 적절한 육상교통수단을 제공·운용하여야 한다.
  17. 사찰단은 사찰대상국이 안전요건이나 비행규칙과 본 장

제8항에서 제21항까지의 규정준수를 전제로 하여, 본 의정서 제7항 또는 제8장에 의거한 사찰을 실시하는 동안에 사찰대상국이 제공하고 운행하는 헬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경우, 언제나 사찰대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8. 사찰대상국은 사찰대상지역이 20평방킬로미터 미만일 경우에 헬기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19. 사찰대상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상공에 대한 헬기비행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찰대상지역의 다른 부분의 상공에 대한 헬기 비행을 배척할 수 없다. 헬기의 영공 비행중 민감한 부분 또는 그 주변의 사진 촬영은 호송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 사찰지역 상공에서의 헬기비행 체류시간은 감찰단과 호송단의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총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1. 사찰대상국이 제공하는 헬기는 적어도 사찰단중 1명과 호송단중 1명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사찰요원은 사찰대상지역의 상공비행에 있어서 장 제15장에 열거된 어느 장비라도 탑재 사용할 수 있다. 사찰단은 사찰비행중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호송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헬기는 사찰단에게 항상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호송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헬기는 사찰단에게 항상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22. 사찰단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찰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작업을 불필요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거나 안전잡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본 장 제24장에서 제29장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찰단은 검증대상물에 대한 사찰이나 특정지역내의 사찰이 실시되는 동안에
- 가.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의 경우, 전체 특정지역내에서나, 검증의 대상물에 대한 사찰의 경우, 사찰단이 사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검증대상물에 전적으로 속한 것으로 지적도상에 표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정지역내에서 접근, 출입할 수 있으며 방해없이 사찰할 수 있다.
24.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단, 본 장 제25항을 단서로) 실시되는 검증의 대상물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있는 사찰요원은 본 장 제23항에 명기된 지역내에서 전차, 전투용장갑차량, 포, 전투용헬기, 전투기, 전투용으로 재분류된 훈련용항공기, 병력수송용장갑차류, 보병전투용장갑차류, 가교부설용장갑차 등이 상존하거나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장소와 건조물 또는 건조물 주변지역에 들어갈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사찰요원은 폭 2m를 넘지 않는 직원 전용문으로서만 출입이 가능하거나 호송단이 출입을 거부한 기타 건조물이나 건조물 주변지역에 들어갈 권리는 갖지 않는다.
25.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검증의 대상물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있는 사찰요원은 전차, 전투용장갑차량, 포, 전투용헬기, 전투기, 전투용으로 재분류된 훈련기, 병력수송용장갑차류, 보병전투용장갑차류, 가교부설용장갑차의 상존여부와 이들의 수량, 모델, 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화된 비행기 격납고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 장 제2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찰요원은 호

송단의 동의만으로 상기 격납고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호송단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사찰요원의 요청시에는 상기 격납고 내부에 있는 전차, 전투용 장갑차량, 포, 전투용 헬기, 전투기, 전투용으로 재분류된 훈련기, 병력수송용 장갑차류, 보병전투용 장갑차류, 가교부설용장갑차 등을 외부에 도열하여야 한다.

26.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검증의 대상물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본 장 제27항에서 제33항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요원은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수량, 형태, 모델, 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에 접근할 수 있다.
27. 사찰대상국은 장비중 민감한 개별 품목을 가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8. 호송단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찰단의 접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가능한 한 수와 양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가려진 물체나 또는 규격(넓이, 높이, 길이, 대각선 등)이 2미터 이내인 용기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민감한 부분 또는 가려진 물체나 용기가 있을 때, 호송단은 전차, 전투용장갑차량, 포, 전투용 헬기, 전투기, 전투용으로 재분류된 훈련기, 병력수송용 장갑차류, 보병전투용 장갑차량류, 가교부설용 장갑차량 등이 내부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다면 이들의 수량과 형태, 모델, 형 등을 밝혀야 한다.
29. 호송단이 민감한 부분이나 가려진 물체 또는 용기에 본 장 제28항에 열거된 무기 및 장비가 들어있다고 밝힌 경우, 호송단은 상기 무기 및 장비를 외부에 도열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수량이외의 무기 및 장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사찰단이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0.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검증의 대상물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있어서 「현존 무기유형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다목적 공격용헬기와 동형이거나 또는 동형이었던 헬기가 사찰장소에 있고 호송단이 전투지원용 헬기라고 밝힌 경우, 또는 Mi 24R이나 Mi 24K형 헬기가 사찰장소에 있고 사찰단이 「헬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제1장 제3항에 의거한 제한대상이라고 밝힌 경우, 동 헬기는 본 의정서 제9장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내부가 사찰의 대상이 된다.
31.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검증의 대상물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항공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제2장에 포함된 특정모델의 항공기나 전투가능 훈련기가 사찰장소에 있고 호송단이 「항공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비무장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힌 경우, 동 항공기는 본 의정서 제9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내부가 사찰의 대상이 된다.
32.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검증의 대상물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호송단이 병력수송용 장갑차류 또는 보병전투용 장갑차류로 밝힌 장갑차량이 사찰장소에 있을 경우, 사찰단은 동 차량이 전투보병분대 수송용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차량의 외부에서 내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동 차량의 문이나 해치의 개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차량상의 또는 차량내부의 민감한 장비는 가릴 수 있다.
33. 본 의정서 제7장 또는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검

증의 대상물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사찰활동중에 호송단이 「감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감축해 온 것으로 밝힌 장비품목이 사찰장소에 있을 경우, 사찰단은 동 장비 품목들이 「감축에 관한 의정서」 제8장에서 제12장 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장비품목을 사찰할 권리를 가진다.

34. 지정된 상설 저장소에 50품목 이상의 재래식 무기 및 장비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내에 존재하는 것을 포함한 조약 적용대상인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존재를 기록하기 위해 사찰단은 비디오를 포함한 사진촬영의 권리를 가진다. 단, 일반카메라는 35mm 카메라 또는 즉석에서 인화되는 카메라로 제한된다. 사찰단은 사진 촬영 계획 여부에 대해 미리 호송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단은 사찰단의 사진촬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35.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은 호송단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된다.
36. 본 장 제3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 제34 항에 명시된 저장소이외의 구조물 내부에 대한 사진촬영은 호송단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된다.
37. 사찰단은 사찰활동중에 발생하는 불명료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사찰활동중에 취해진 상기 조치들은 조치이후 즉시 사찰단 구성원 및 호송단 구성원에 의해 추인되어야 한다. 추인된 기록은 사찰 보고서에 포함된다.
38. 각 당사국은 사찰과정에서 실제적 정보와 관련해서 야기되는 불명료함을 가능한 즉시 해소하여야 한다. 사찰요원이 호송단에 불명료한 문제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 호송단은 즉각 사찰단에 이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만일 사찰요원이 해소되지 않은 불명료한

문제에 대해 사진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즉석에서 현상·인화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적절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사찰과정에서 불명료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소명내용 및 사진을 본 의정서 제12장에 따라 사찰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9. 본 의정서 제7장과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찰에 있어서 사찰은 사찰결과보고서에 양 당사국이 서명하였을 때 종료된 것으로 본다.
40. 지정장소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사찰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찰단은 계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호송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계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경우에 사찰단은 이를 통보시에 다음 사찰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의정서 제7장 제6항 및 제17항과 제8장 제6항 A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사찰대상국은 사찰단이 앞서의 사찰이 종료된 직후에 다음 사찰장소에 가능한 한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사찰단이 계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본 장 제42항 및 제43항 규정에 따른다.
41. 사찰단은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조건으로하여 앞서의 사찰을 실시한 바 있는 사찰대상국의 영토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 가. 앞선 사찰장소와 동일한 출입국 지점과 연계되거나 사찰단이 도착한 동일한 출입국 지점과 연계된 지정장소
  - 나.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5장에 의거하여 사찰단이 도착한 출입국 지점을 최근접 출입국 지점으로 통보한 특정지역내

- 다. 동일 군사관구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앞선 사찰장소의 200km 반경내 지역
- 라. 본 의정서 제7장 제11항 A에 의거하여 사찰대상국이 앞선 사찰장소에서의 검증 대상물에 대한 사찰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차, 장갑차량, 포, 전투용 헬기, 전투기 또는 부교가설용 장갑차량을 임시로 주둔한 지역으로 주장한 장소로서 동 재래식 무기 및 장비가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한 가장 최근의 통보에 포함된 무기 및 장비의 15% 이상을 점하고 있을 경우
- 마. 본 의정서 제7장 제11항 B에 의거하여 사찰대상국이 앞선 사찰장소에 존재하던 전차, 장갑차량, 포, 전투용헬기, 전투기 또는 부교가설용 장갑차량의 원래 주둔지역으로 주장한 장소로서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하여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통보에 포함된 앞선 사찰장소에 있어야 할 무기 및 장비의 수량을 초과하고 그러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수량이 통보된 것보다 15%를 초과할 경우
42. 신고된 장소 또는 특정지역내에서의 사찰이 종료된 후에 계속적인 사찰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찰단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적절한 출입국 지점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사찰이 실시된 당사국의 영토를 24시간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43.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사찰단은 사찰을 실시한 사찰대상국의 영토를 입국시에 이용했던 출입국 지점을 통해 퇴거하여야 한다. 만일 사찰단이 사찰 실시의 목적으로 다른 사찰대상국의 영토상의 출입국 지점으로 진출하기를 원한다면, 사찰단은 사찰시행국이 본 의정서 제4장 제1항에 따른 필요 통보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권리を持つ 것이다.

## 제 7 장 지정장소에 대한 사찰

1. 본 의정서에 의거한 지정지역에 대한 사찰은 거부할 수 없다. 단, 본 의정서 제2장 제7항 및 제20항에서 제22항에 따른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상기 사찰을 연기할 수 있다.
2. 본 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단은 본 장 제7항에 의거하여 첫번째 사찰장소로 지정할 예정인 지정장소와 연계된 것으로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5장에 나타난 출입국 지점을 통해 사찰이 실시될 사찰대상국의 영토에 도착하여야 한다.
3. 사찰시행국이 특정의 지상 국경통과점이나 항구를 출입국 지점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또한 사찰시행국이 본 장 제7항에 의거하여 첫번째 사찰장소로 지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지정 장소와 연계된 출입국 지점으로 어떤 지상의 국경통과점이나 항구를 사찰대상국이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5장에 의거하여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찰시행국은 본 의정서 제7장 제2항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통지문에 희망하고 있는 지상의 국경통과점이나 항구를 출입국 지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찰대상국은 본 의정서 제4장 제4항에 규정된 동 통지문의 접수에 대한 회신에서 제시된 출입국 지점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사찰대상국은 사찰시행국에 대해 원래 희망한 출입국 지점과 가능한 한 가까운 다른 출입국 지점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출입국 지점은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5장에 의거하여 통보된 공항이나 사찰단 및 수용요원

이 통과할 수 있는 항구 또는 지상의 국경 통과점으로 할 수 있다.

4. 사찰시행국이 본 장 제3항에 의거하여 어떤 지상의 국경 통과점이나 항구를 출입국 지점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한다는 통보를 할 경우, 사찰시행국은 통보에 앞서서 본 장 제8항에 명시된 시한내에 사찰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첫번째 지정장소에 지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할 수 있다는 객관적 확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사찰단과 수송요원이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5장에 의거하여 첫번째 사찰장소를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지정장소와 연계된 것으로 통보한 출입국 지점과 다른 출입국 지점을 통해 사찰이 실시될 사찰대상국의 영토에 본 장 제3항에 의거하여 도착하였을 경우, 사찰대상국은 가능한한 신속히 상기 지정장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본 장 제8항에 명시된 시간의 초과를 허용하여야 한다.
6. 사찰대상국은 지정장소를 지정한 후에 동 장소에 사찰단이 도착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본 의정서 제4장 제2항 E에 의거하여 통보한 바 있는 출입국 지점에 도착이후 1시간으로부터 16시간 사이에 사찰단은 첫번째로 사찰을 실시할 지정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8. 사찰대상국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사찰단이 첫번째 지정장소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찰장소를 지정한 후 9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신속히 동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찰 대상장소가 산악지역에 위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

우에 사찰단은 동 사찰장소에 장소지정이후 15시간이내에 수송되어야 한다. 9시간을 초과하는 이동 소요시간은 사찰단의 사찰대상국내 체류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9. 사찰단이 사전에 장소도면 교환에 의하여 도면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동 도면을 제공할 브리핑 시설로 안내되어야 한다. 지정장소 도착 시에 제공할 규정장소 도면은 다음에 대한 정밀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
  - 가. 규정장소내의 지점의 위치 및 진북표시와 함께 10초 간격으로 된 각 지점간의 거리적 좌표
  - 나. 장소도면에 사용된 축적
  - 다. 지정장소의 반경
  - 라. 각 검증대상물이 전적으로 속해 있는 지역의 정확한 경계선. 여기에는 각 지역에 있는 검증 대상물의 편제나 부대기록이 표시되어야 하며 각 검증 대상물에 속해 있는 전차, 장갑차, 포, 전투기, 전투용헬기, 재분류된 전투가능훈련기, 병력수송용장갑차류, 보병전투용장갑차류 및 가교부설용장갑차 등이 항구적으로 예속 배치된 별도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 마. 지정장소내 주요건물 및 도로
  - 바. 지정장소의 출입구
  - 사. 본 의정서 제6장 제14항에 따라 제공되는 사찰단을 위한 행정구역 위치
10. 사찰단은 지정장소의 도면을 접수한 후 1시간 반 이내에 사찰을 실시할 검증대상물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찰단은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찰전의 요약보고를 받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사찰장소에서의 안전규칙 및 행정절차

- 나. 사찰장소에서의 사찰단을 위한 수송 및 통신방식
- 다. 지정장소의 공통구역을 포함한 사찰장소에서의 전차, 장갑차, 포, 전투기, 전투용헬기, 재분류된 전투가능 훈련기, 병력수송용 장갑차류, 보병·전투용 장갑차류 및 가교부설용 장갑차류의 보유내역 및 위치와 사찰이 실시될 동일 검증대상물에 속해 있으나 분리배치된 예하 부대의 상기무기들의 보유내역과 위치
11. 사찰전 요약보고에는 사찰장소에 있는 전차, 장갑차, 포, 전투기, 전투용 헬기 및 가교부설용 장갑차의 수량과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하여 가장 최근에 통보된 해당무기의 수량과의 차이를 다음 규정에 따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사찰장소에 있는 무기의 수량이 통보된 수량보다 적을 경우, 동 무기가 있는 임시저장소
- 나. 사찰장소에 있는 무기의 수량이 통보된 수량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 무기의 원래의 장소, 원래의 장소를 떠난 시간, 사찰장소 도착시간 및 주둔예정 시간
12. 사찰단이 사찰을 실시할 검증 대상물을 지정할 때, 사찰단은 검증 대상물에 대한 사찰의 일환으로 동 검증 대상물이 속해 있는 것으로 사찰장소 도면상에 표기된 영역 전체에 대한 사찰권을 가진다. 또한 동 검증 대상물에 속하는 재래식 무기 및 장비들이 항구적으로 배치된 동일 당사국의 영토상의 별도지역에 대한 사찰권도 가진다.
13. 지정장소에서의 검증 대상물에 대한 사찰은 사찰단의 지정장소 전지역내에서의 접근, 출입 및 방해받지 않는 사찰의 허용을 의미한다. 단, 사찰단이 사찰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다른 검증 대상물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지정장소 도면에 표기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 사찰에는 본 의정서 제6장이 적용된다.
14. 지정 장소에서의 검증 대상물의 하나로 확보된 것으로  
써 통보된 바 있는 전차, 장갑차, 포, 전투용헬기, 전투  
기, 재분류된 전투가능 훈련기, 병력수송용장갑차류, 보  
병전투용장갑차류 및 가교부설용장갑차 등이 다른 검  
증대상물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장소도면상에 표기  
되어진 지역내에 있는 것으로 호송단이 사찰단에 통보  
한 경우, 호송단은 사찰단이 동일 사찰의 일환으로 동  
재래식 무기 및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5. 조약에 의해 제한되는 재래식 무기 및 장비와 가교부설  
용장갑차가 지정장소내에 있으나 어떤 검증 대상물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장소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송단은 동 재래식 무기 및 장비가 어느  
검증대상물에 속하는 것인지를 사찰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각 당사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3장에 의거  
하여 통보된 조약상의 제한 대상인 재래식 무기 및 장  
비의 각 부문별 총합에 대해 다른 당사국이 요구할 경  
우, 여단 / 연대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편제단위로 설명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7. 지정장소에서의 사찰도중에 사찰단이 미리 지정하지 않은  
동 장소내의 검증대상물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찰단은 그 지정이후 3시간 이내에 사찰  
을 개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에 사찰단은 본 장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다음 사찰대상으로 지정한  
검증대상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 제 8 장 특별사찰

1.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에 따라 특정지역내에서 특별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2. 사찰시행국이 출입국 지점에 도착 이후에 특정지역내의 특별사찰을 첫번째 사찰로써 실시하려는 경우,
  - 가. 본 의정서 제4장에 의거한 통보에는 사찰시행국이 선택한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특정지역내 또는 특정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정된 출입국지점을 포함시켜야 하며
  - 나. 본 의정서 제4장 제4항 E에 의거하여 통보된 출입국 지점에 도착 이후 1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사찰단은 사찰을 희망하는 첫번째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 사찰단은 사찰 요청의 일환으로 호송단에게 동지역의 외곽경계선을 명시한 지리적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찰단은 동 요청의 일환으로 사찰하고자 하는 건조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특별사찰이 요청된 영토상의 주권 당사국은 특정지역의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로 사찰대상국과 협정에 의하여 동 특정지역내의 구조물이나 부속대지를 사용하는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동 특정지역의 외곽 경계선을 명시한 지리적 설명서를 포함한 요청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찰대상국은 특정지역내에서의 특별사찰을 거부할 권리 를 가진다.
5. 사찰대상국은 특정지역의 지정이후 2시간 이내에 사찰요 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사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특정지역에 대한 접근이 승인되었을 경우,
  - 가. 사찰대상국은 특정지역에 사찰단이 도착하는 것을 준

비하기 위하여 사찰요청을 접수한 후, 6시간까지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나. 사찰대상국은 사찰단이 첫번째 특정지역으로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동하고 사찰지역 지정후에도 가능한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사찰요청이 접수된 후 9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찰단과 호송단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있거나 또는 동 지역이 산악에 위치하거나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사찰단은 사찰대상지역으로 사찰요청이 접수된 후 15시간 이내에 이동하여야 한다. 9시간을 초과하는 이동시간은 사찰단의 사찰대상국내 체류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의정서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지역내에서 호송단은 동 지역의 일정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상공비행을 지체시킬 수 있다. 지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찰단은 동 사찰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지체시간은 사찰대상국내의 체류시간이나 특정지역내 최장체류허용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7. 사찰대상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이 사용하는 구조물이나 부속대지에 사찰단이 접근을 요청한 경우, 사찰대상국은 동 국에 대해 이러한 요청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송단은 동 구조물 및 부속대지를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에 관련된 사찰에 대하여서는 사용에 관한 협정의 범위내에서 사찰 대상국과의 협조아래 본 의정서에 나타난 권리 의무를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사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찰대상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도착과 함께

사찰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 보고는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보고내용에는 안전수칙 및 행정절차 등이 포함된다.

9. 특정지역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경우,

- 가. 사찰대상국이나 사찰대상국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당사국은 동 특정지역에 조약상의 제한대상인 재래식 무기나 장비가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무기나 장비가 존재하며 조약 제5조에 따라 동 지역에서 평시에 국내 안보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거나 구조화된 조직에 동무기나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사찰대상국이나 사찰대상국의 권리 의무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이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경우, 실행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시각적 확인이 허용되어야 한다.
- 나. 이는 사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장소의 지정과 이에대한 거부시점까지는 사찰대상국내의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찰단은 다른 특정지역이나 지정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찰종료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 제 9 장 확인절차에 대한 사찰

1. 각 당사국은 「항공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헬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및 본 장 규정에 따라 재분류된 목적 공격용헬기와 재분류된 전투가능 훈련기의 확인절차에 대하여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거부권은 없다. 이러한 사찰은 본 의정서 제2장

에 명시된 사찰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찰을 실시하는 사찰단은 각각 다른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다. 사찰대상국은 각각의 확인장소에서 한번에 하나 이상의 사찰단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2. 본 장에 따라 확인절차에 대한 사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사찰단은 각각의 확인장소에서 2 일까지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3. 재분류된 다목적 공격용헬기와 전투가능 훈련기에 대한 확인절차의 개시 이전 1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하는 당사국은 기타 모든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지리적 좌표로 표시된 확인절차를 실시할 장소
  - 나. 확인절차의 예정일자
  - 다. 확인대상 헬기 또는 항공기의 추정 수량, 형태, 모델, 형
  - 라. 각 헬기 또는 항공기의 제작 일련번호
  - 마. 헬기 또는 항공기가 이전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 또는 위치
  - 바. 확인을 거친 헬기 또는 항공기가 향후 배치될 부대 또는 위치
  - 사. 사찰단이 이용할 출입국 지점
  - 아. 사찰단이 확인절차에 대한 사찰을 위해 출입국 지점에 도착할 일시
4. 사찰요원은 제작 일련번호 확인 등을 위하여 헬기 또는 항공기의 조종석 및 내부에 들어가서 시각적인 사찰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사찰대상국측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사찰단이 요청할 경우, 호송단은 「항공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또는 「헬기재분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부품

이나 배선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가리고 있는 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송단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사찰요원은 재분류가 확인되었거나 재분류될 것으로 확인된 다목적 공격용헬기의 부품의 작동을 요청하거나 관찰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사찰대상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7. 각 확인절차에 대한 사찰의 종료시에 사찰단은 본 의정서 제7장 규정에 따라 사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본 의정서 제4장 제3항에 따른 적절한 통보가 있었을 경우, 확인장소에서의 사찰종료와 함께 사찰단은 사찰 대상국의 영토를 벗어나거나 다른 확인장소 또는 감축장소에서 계속적인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호송단에게 확인장소를 벗어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확인장소 또는 감축장소에서 계속적인 사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사를 최소한 출발시간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9. 확인종료후 7일이내에 확인절차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 확인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에는 확인된 헬기 또는 항공기의 수량, 형태, 모델, 형, 제작 일련번호와 관련 확인장소, 확인일자 및 재분류된 헬기 또는 항공기가 배치될 부대나 위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감축절차에 대한 사찰

1. 각 당사국은 「감축에 관한 의정서」 제1장에서 제8장과 제10장에서 제12장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감축절차에 대해 본 장 규정에 따라 사찰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사찰대상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동 사

찰은 본 의정서 제2장에 명시된 각 당사국의 사찰 해당 횟수에 계산되지 않는다. 상기 사찰을 실시하는 사찰단은 각각 다른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다. 사찰대상국은 각 감축장소에 한번에 하나 이상의 사찰단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2. 사찰대상국은 오직 「조약」 제8조와 「감축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만 감축 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감축절차에 대한 사찰은 현재 진행 중인 감축절차에 개입 또는 동 절차의 진행을 불필요하게 방해, 지체 또는 복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 제3장에 의하여 통보된 감축 장소가 둘 이상의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경우, 감축절차에 대한 사찰은 동 감축장소를 사용하는 각 당사국이 제시한 동 장소 사용에 관한 시간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조약상의 제한 대상인 재래식 무기 및 장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각 당사국은 여타 당사국에 대해 감축실시 각 단위기간중 각 감축장소에서 어느 무기 및 장비가 감축될 것인지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각 감축실시 단위 시간은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범위를 가진다. 이 규정은 감축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감축장소에서 감축이 실시될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5. 감축절차를 실시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감축 실시단위기간에 따른 15일 이전에 여타 당사국에 감축실시 단위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에는 지리적 좌표로 표시된 감축장소의 지정, 계획된 감축개시일자, 기간중에 감축하기로 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감축 종료일자가 포함된다.

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래 사항도 확인되어야 한다.

가. 감축할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추정수량 및 형식

나. 감축부품이 회수되어질 검증의 대상물

다. 감축하여야 할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각각의 형식에  
따라 「감축에 관한 의정서」 제3장에서 제8장, 제10  
장에서 제12장에 의거하여 채택될 감축절차

라. 감축실시 단위기간중에 감축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사찰단이 사용할 출입국 지점

마. 감축개시 이전에 재래식 무기 및 장비를 사찰하기 위  
해 사찰단이 도착해야 할 일시

6. 본 장 제1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단은 감  
축실시 단위기간중에 또는 통보된 감축실시 단위기간 종  
료 후 3일 이내에 어느때라도 감축장소에 도착하거나 떠  
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찰단은 감축실시 단위기간 간  
의 간격이 3일을 넘지않을 경우에는 감축장소에 잔유할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감축장소에 잔류하는 기간동안  
「감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감축절차를  
관찰할 권리를 가진다.

7.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사찰단은 감축할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제조일련번호를 자유로이 기록하거나, 감축 이전  
동 장비에 특별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감축  
에 관한 의정서」 제2장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감축  
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부품 및 구성요소나, 또는 전  
환의 경우,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된 차량은 감축된 부  
품에 대한 사찰이 이전에 종료되지 않았다면 통보된 감  
축실시 단위기간의 종료이후 3일동안 사찰에 응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8. 조약상의 제한대상인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감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감축중인 품목의 제작 일련번호와 감축절

차 개시 및 종료일자를 기록할 운용 기록부를 각 감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동 기록부에는 각 감축실시 단위기간별 총계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동 기록부는 사찰기간동안 사찰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감축절차에 대한 사찰의 종료시마다 사찰단은 사찰단장과 사찰대상국의 대표가 서명한 규격화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본 의정서 제12장 규정이 적용된다.
10. 감축장소에서의 사찰 종료와 함께 사찰단은 사찰대상국의 영토를 벗어나거나 또는 본 의정서 제4장 제3항에 따른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감축장소나 확인장소에서 계속적인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찰단은 감축장소로부터 벗어날 의사, 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감축장소나 확인장소로 이동할 의사를 최소한 출발시간 24시간 전에 호송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각 당사국은 「감축에 관한 의정서」 제8장에 의거하여 재래식 무기 및 장비가 비 군사적 목적의 차량으로의 전환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매년 10번의 한도 내에서 사찰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동 사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가. 본 장 제5장 E에 의거한 통보에는 재래식 장비가 비군사적인 목적의 차량으로의 전환이 종료될때에 동 장비 품목에 대한 사찰을 위해 사찰단이 출입국 지점에 도착할 일시만을 적시한다.
  - 나. 사찰단은 통보된 전환 종료일자로부터 3일이내에 감축장소에 도착하거나 벗어날 권리를 가진다.
12. 감축실시 단위기간에 따른 감축절차의 종료후 7일 이내에 감축실시 당사국은 모든 여타 당사국에 각 단위기간

에 따른 감축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에는 감축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수량과 형식, 관련 감축장소, 채택된 감축절차, 감축실시 단위기간중에 실제 감축개시 및 종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감축에 관한 의정서」 제10장, 11장, 12장에 의거하여 감축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에 대해서는 동 무기 및 장비가 향후 주둔하고 있을 위치를 동 통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축에 의정서」 제8장에 의거하여 감축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에 대해서는 동 무기 및 장비의 최종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감축장소나 전환이 예정된 각 품목이 이동될 저장소의 위치를 동 통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 11 장 사찰의 취소

1. 사찰단이 본래의 예정 도착시간 또는 본 의정서 제4장 제6항에 의거하여 협의 변경된 예정 도착시간 이후 6시간 까지 출입국 지점에 도착이 불가능함을 알았을 경우에 사찰시행국은 본 의정서 제4장 제1항에 의거하여 통보하였던 당사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찰의사의 통보는 효력을 잃으며 사찰은 취소된다.
2. 사찰단이 출입국 지점에 도착한 이후에 사찰시행국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지체사유로 첫번째 지정된 사찰장소에 본 의정서 제7장 제8항 또는 제8장 제6항 B에 명시된 시간내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찰시행국은 사찰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찰이 취소되었을 경우 조약에 규정된 어떠한 사찰 회수에도 계산되지 않는다.

## 제 12 장 사찰보고서

1. 본 의정서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에 의거하여 실시된 사찰 종료를 위하여 사찰장소를 떠나기 전에
  - 가. 사찰단은 호송단에게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나. 호송단은 동 사찰 보고서에 주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찰단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1시간이내에 부서할 수 있다. 단, 양자간에 사찰 연장이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찰 보고서는 사찰단장이 서명을 한 후, 호송단장이 서면으로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찰보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규격화되어야 한다. 각 사찰형태에 따른 보고서 형식은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공동협의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본 의정서 제7장 및 제8장에 의거하여 실시된 사찰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사찰장소
  - 나. 사찰단의 사찰장소 도착일시
  - 다. 사찰단의 사찰장소 출발일시
  - 라. 사찰중에 관찰된 전차, 장갑차, 포, 전투기, 전투용헬기, 재분류된 전투가능 훈련기, 병력수송용 장갑차류, 보병전투용 장갑차류, 가교부설용 장갑차류의 형, 유형, 변형 및 수량과 필요시 이들이 속한 검증 대상물의 표시
5. 본 의정서 제9장 및 제10장에 의거하여 실시된 사찰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감축이나 확인절차가 실시된 감축장소 또는 확인장소
  - 나. 사찰단이 동 장소에 체류한 일자
  - 다. 감축 또는 확인절차의 대상이 된 재래식 무기 및 장

- 비의 형, 유형, 변형과 수량
- 라. 사찰중에 기록된 일련번호 목록
  - 마. 감축의 경우에 적용된 또는 준수된 개개의 감축 절차
  - 사. 감축의 경우에 사찰단이 단위 감축기간동안에 감축 장소에 체류하였다면 감축절차의 개시 및 종료일자
6. 사찰 보고서는 본 의정서 제4장 제2항 G 또는 제3항 F에 따라 사찰시행국이 지정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공식언어로써 작성되어야 한다.
  7. 사찰시행국과 사찰대상국은 사찰 보고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각 당사국의 재량으로 사찰보고서를 기타 당사국에 배포할 수 있으며 관례적으로 공동협의단에 제출할 수 있다.
  8. 주둔 당사국은 특히,
    - 가. 사찰대상국내에 배치된 동 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사찰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된 주석을 포함시킬 권리를 가진다.
    - 나. 사찰대상국내에 배치된 동 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보고서 1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 13 장 사찰 및 수송요원의 특권 및 의무면제

1. 사찰요원 및 수송요원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조약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1961년 4월 18일 조인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인협약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한 외교관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면제가 주어진다.
2. 또한 사찰요원과 수송요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인협약

제36조 제1항 b에 의거한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이 주어진다. 사찰요원과 수송요원은 사찰이 실시되는 사찰대상국이 반출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검역 규정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 물품을 동 국 영토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찰단의 수송수단은 조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4. 사찰시행국은 동 국의 사찰요원이나 수송요원에 대한 사법권의 면제가 대상국의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나 조약규정의 이행에 있어서 기득권의 침해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사찰시행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찰요원이나 수송요원에 대한 사법권 면제는 동 요원의 국적 당사국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포기 의사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5. 본 장에 규정된 특권 및 의무면제는 다음의 경우에 사찰요원 또는 수송요원에게 적용된다.
  - 가. 사찰대상국의 영토에서 사찰을 실시할 목적으로 기타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과정
  - 나. 사찰이 실시될 사찰대상국의 영토상에 체류하는 모든 과정
  - 다. 사찰 요원 또는 수송요원의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부수 행위과정
6. 사찰요원 또는 수송요원이 그들의 특권이나 의무면제조항을 남용하였다고 사찰대상국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본 의정서 제6장 제3항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당사국 중에 어느 하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러한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Special Report

---

## 유럽 在來式 軍事力 減縮條約

### 【1】

유럽의 재래식 전력감축조약(CFE – 이하 「조약」)은 NATO측 16개국과 Warsaw측 6개국 등 유럽의 22개국이 참여하여 1990년 11월 19일에 조인되었다.

「조약」은 NATO측과 Warsaw측 쌍방이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에 걸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 장갑차, 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등 5개 분야 무기의 상한선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놓았다.

또한 「조약」은 이러한 무기들의 보유상한선을 3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NATO와 Warsaw측 쌍방이 전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 둘째, 양측이 4개 소지역에 배치 할 수 있는 지역별 상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 등이다.

이밖에 이 「조약」에는 현지사찰, 정보교환,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 【2】

「조약」 제 2조는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5개 무기부문을 규정하고 있다.

「전차(Battle Tank)」는 16.5톤 이상의 중량을 지닌 궤도 장갑차량으로써 구경 76mm이상의 360도 회전 가능한 포로 무장된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미국제 M-41형 전차와 소련제 T-34형 전차 같은 구형과 미국제 M-1형 및 소련제 F-80형 같은 신형이 함께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전차는 장갑차의 범주에 해당된다. 궤도가 아닌 바퀴가 장착된 중장갑차도 여기에 규정된 전차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전차로 분류된다.

「전투용 장갑차」(ACVs)에는 병력수송용 장갑차(APCs), 보병전투용 장갑차(AIFVs)와 전투용 중장갑차(HACVs)가 포함된다. 병력수송용 장갑차(APCs)는 보병분대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구경 20mm이하의 포로 무장된 차량을 의미한다.

보병전투용 장갑차(AIFVs)는 병력 수송 목적이외에 구경 20mm이상의 포로 무장하고 차량 내부에서 사격을 가능할 수 있도록 된 차량을 의미한다.

전투용 중장갑차(HACVs)는 중량이 6톤 이상으로써 구경 75mm이상의 포로 무장된 차량을 의미한다.

「포」는 미사일, 폭탄 또는 기타 화기로써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모델이나 변형도 포함된다. 그러나 훈련용 및 수송기는 제외된다.

조약과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 부속선언은 전투가 가능한 훈련기나 지상배치 해군기도 이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투용 헬기」는 각국에 대부분의 해당 헬기를 지원용 헬기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폐기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특수공격용 헬기는 유도무기를 장착한 헬기로서 NATO가 보유한 Mangusta, Cobra, Apache형과 소련의 M-

24Hind와 그 변형이 이에 해당된다. 다목적 공격용 헬기에  
는 상기 모델이외의 쌍방이 보유한 대부분 헬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투지원용 헬기는 유도무기가 아닌 자위용이나 국지진압용  
무기를 장착한 것으로 조약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조약」 4조는 해당무기의 지역별 배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대서양에서 우랄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 NATO와  
Warsaw쌍방은 각각 전차 20,000대, 장갑차 30,000대, 포  
20,000문, 전투기 6,800대, 공격용 헬기 20,000대 이상을 배  
치할 수 없다.

장갑차 30,000대중 보병전투용 장갑차는 18,000대, 전투용  
중장갑차는 1,500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체적인 허용규모 범위내에서 현역부대에 배치할 수 있  
는 것은 전차 16,500대, 장갑차 27,300대, 포 1,700문을 초  
과하지 못한다.

또한 「조약」 4조는 유럽의 3개 동심(同心)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부차적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부차적인 상한  
선의 적용대상은 현역부대에 배치된 지상무기에 한정한다.  
3개의 동심(同心)지역은 순차적으로 지역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큰지역은 당연히 소지역을 포함한다.

즉 1차 지역제한 범위는 NATO측의 벨기에, 독일, 룩셈  
부르크, 네덜란드와 Warsaw측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지  
역이 해당되며, 이 지역내에는 쌍방이 전차 7,500대, 장갑차  
11,250대, 포 5,000문 이상을 배치할 수 없다.

2차 지역제한 범위는 상기 지역에 덧붙여 NATO측의 덴  
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Warsaw측의 발트 3국, 백러  
시아, 소련의 카파티아 및 키에프 군관구 지역이 추가되며,

이 지역내에는 쌍방이 전차 10,300대, 장갑차 19,260대, 포 9,100문 이상을 배치할 수 없다. 또 이 지역 범위내 키에프 군관구에 배치할 수 있는 상한선은 전차 2,250대, 장갑차 500대, 포 1,500문이다.

3차 지역제한 범위는 2차 지역제한 범위에 NATO측의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추가되며 Warsaw측에서는 모스크바 및 불가우랄 군관구가 추가된다. 이 지역내에는 전차 11,800대, 장갑차 21,400, 포 11,000문 이상을 배치할 수 없다.

「조약」 5조에는 별도로 유럽의 주변지역에 대한 배치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리스, 노르웨이, 터키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레닌그라드 군관구, 코카서스 군관구, 트랜스 코카서스이다. 이 지역내의 배치상한선은 전차 4,700대, 장갑차 5,900대, 포 6,000문이다.

## 【4】

「조약」 6조는 개별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는 소연방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NATO와 Warsaw측의 어느 국가도 보유상한 규모를 초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국가의 무기보유 상한선은 전차 13,300대, 포 13,700문, 장갑차 000대, 항공기 5,150대, 헬기 1,500대이다.

## 【5】

「조약」 7조는 NATO와 Warsaw쌍방이 전체로써의 보유 허용 규모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이 기타 국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약 서명시에 각국은 모든 다른 국가들에게 조약발효시 그 국가가 보유하게 될 제한대상 무기의 최고예상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국이 보유무기를 증강시킬 때는 90일 이전

에 다른 국가에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특정국가의 제한대상 무기의 증강을 통해 NATO 또는 Warsaw쌍방이 전체로써 허용된 규모를 넘게 될 경우는 다른 국가의 보유 무기의 상대적인 감축이 선행 또는 수반되어야 한다.

## 【6】

조약이 규정한 지역내의 한도를 초과하는 분량의 무기는 폐기, 개조 또는 재분류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역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조약」 8조는 감축에 대한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조약의 발효 16개월 이내 제한대상 무기의 한도초과분의 1/4을 감축시켜야 하고 1년이내 60%를, 이후 40개월내 모든 감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도초과분 무기의 감축 방법에 대해서도 부속 의정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전차의 경우 주요부분을 절단하거나, 폭파, 변형, 또는 건물파기용 대형 쇠망치를 이용하여 분쇄하여야 한다. 무기의 감축은 최대한 20곳 이하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각국은 보유전차 대수의 5.7%나 150대 양자중 큰 수치를 민간 용도로 개조할 수 있다. 전투용 장갑차도 각국의 보유 대수의 15%나 150대 양자중 큰 수치를 민간용으로 개조할 수 있다.

개조에는 전차의 경우 장착된 화기 제거와, 포탑의 제거, 포탄주입 부분의 용접, 포신절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무기에 대한 개조허용은 전차 및 장갑차 등을 불도저, 소방차, 크레인, 쇄빙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투 수행이 가능한 훈련기는 550대까지 비무장 훈련기로 재분류될 수 있다. 부속의정서에 의하면 재분류됨으로써 제한대상 무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장착

된 무기통제 및 유도장치를 해체하여야 하며 기타 전투수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해체되어야 한다.

재분류된 항공기도 현지사찰의 대상이 되며 현지사찰 요원이 항공기의 조종석을 검사하고 제거된 부품과 배선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장소의 계기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7】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조약」 13조와 정보교환에 관한 부속의정서는 각국이 보유무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조약조인시, 조인후 90일이내, 조약 발효후 30일 이내, 40개월이내 등 4차례와 매년 12월 15일 다른 모든 국가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보해야 될 자료의 범주에는

첫째, 지상군, 공군, 방공군의 여단 및 연대급까지의 지휘계통도표와 지휘부의 직속 차상급 독립단위부대의 지휘계통도표

둘째,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약 적용대상 무기의 수치 및 종류의 전체적 지역별 배치상황

셋째, 지휘계통표에 나타난 각 단위부대의 위치 및 보유 무기 실태

넷째, 무기저장고, 감축장, 훈련장소 등의 위치와 배치무기 실태

다섯째, 과거 1년동안 철거하거나 새로이 실전배치한 조약 적용대상 무기의 수치 및 종류

여섯째, 지상군, 공군, 방공군 부대 이외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무기의 배치장소와 보유 실태

일곱째, 조약적용 대상이 아닌 무기들, 예를들면 전투지원용 헬기, 비무장수송용 헬기, 유사보병 전투용 장갑차, 유사

## 병력 수송용 장갑차 등의 배치장소와 보유실태

### 【8】

「조약」 14조와 검증에 관한 의정서에는 조약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국은 타국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와 자국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약」 14조에는 또한 합의에 따라 일정횟수의 공중사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또 각국은 자국군에 대한 「검증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할당된 횟수의 예고된 현지사찰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검증대상지」로서는 지휘계통표에 나타난 단위부대, 상설무기 저장소, 무기감축장소, 훈련소 및 보수창 등이 포함된다.

조약 발효후 120일이내 각국은 자국의 「검증대상지」의 20%에 해당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후 각국의 조약에서 규정한 보유허용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인 3년까지는 매년 「검증대상지」의 10%에 해당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각국은 보유무기의 감축, 재분류, 개조에 대한 현지검증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찰은 상기한 사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년 경과후 처음 120일 동안 20%를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5%에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

사찰허용횟수 범위내에서 각국은 미신고 지역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 사찰대상지역 소속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동 지역에 조약의 제한대상인 무기나 장비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약」 15조는 각국은 조약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술적 수단이나 다국적 기술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각국은 이러한 수단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기피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 【9】

「조약」 16조는 광범한 기능을 가진 공동자문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구의 기능에는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해결, 조약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해명, 조약의 효율성 제고, 조약 이행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약」 18조는 조약 조인 참여국들이 향후 병력제한과 영공사찰 문제등을 포함한 후속적인 군비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1992년 3월 예정된 유럽안보협의회 회의시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 19조는 조약참여 어느 국가도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특히 다른 국가가 유럽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명백한 위협을 제공할 정도로 조약의 적용대상 지역 밖에서 제한 대상 무기를 증강시킬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약에서 탈퇴는 15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다.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 최근의 미 군사 전략변화

첨단 기술을 응용한 미국의 군사력은 한번에 하나의 국지전을 수행해 나간다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성 있게 할 것이라고 ‘애스핀’ 미 국방장관은 말한바 있다. ‘클린턴’ 미 행정부의 전쟁계획은 두개 지역에서 전쟁이 동시에 발발했을 때, 한지역에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패배시키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적을 소극적으로 봉쇄한다는 개념의 군사력 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win-hold-win’ 전략으로 이름 붙여진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개념은 몇몇 고위 군부지도자들로 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한 사성장군은 이 전략이 한 지역에서의 승리와 다른 지역에서의 패배로 결과적으로 모든 패배를 뜻하는 ‘win-lose-lose’로 이름 붙여져야 한다고 혹평하는가 하면 다른 고위 군장성은 인터뷰에서 이를 ‘win-hold-oops’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애스핀’ 국방장관은 무기와 감응장치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제2의 적은 소규모 병력 투입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전쟁수행전략 개념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win-hold-win’ 전략은 미 국방부의 전면적인 안보계획 재검토 차원에서 토의되고 있는 군사력의 재감축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92년 대통령 선거기간중 ‘부시’ 행정부시절에 계획되었던 160만 수준의 상비군을 140만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애스핀’ 국방장관은 다시 구체적으로 육군을 12개 사단에서 10개 사단 규모로, 12척의 항공모함을 10척으로, 26.5개 비행단을 20개로 감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애스핀’ 국방장관은 2개 지역이상에서의 적의 기갑공격을 저지시킬 필요성이 새로운 군사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최근 말하였다. 또한 그는 적의 공격을 가능한한 빨리 저지할 보다 절실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항구나 정유시설 또는 우방의 수도와 같은 중요거점을 상실케함으로써 우방국이 적에 항복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적의 기갑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매우 풀기 힘든 문제처럼 보였으나, 상승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두가지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해 우리는 보다 큰 승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두가지 첨단무기체계중의 하나는 대전차 무기인 BAT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정밀유도 대장갑장비이다. 이러한 무기들이 원래의 기대대로 작동되어진다면 소규모의 기동타격 병력만으로써도 BAT 등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이용하거나 원거리에서 적 기갑병력의 중심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자체유도 장치에 의해 개별 목표의 음향이나 열을 추적하게 된다. “처음으로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육·해·공에서 신속하게 적의 대규모 기갑 병력을 궤멸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애스핀’ 국방장관은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거리 무기와 함께 새로운 탐지기술을 이용하여 적 병력의 주집결지를 탐지하고 획득정보를 처리·분석, 이를 아군측에 적시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원거리용 무기를 중시하는 전략은 최근 적의 지상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공군으로부터 가장 열렬히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애스핀’ 국방장관의 생각은 육군으로부터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군부인사들은 ‘애스핀’ 국방장관이 미군이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기들을 가상하여 동시 분쟁에 대처하는데 따른 위험성을 ‘애스핀’ 국방장관도 인식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한국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전략은 서울을 일단 포기한 후 다시 병력을 투입, 적을 제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전쟁계획도 미국이 정확히 동시에 2개의 주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유사시 공수 및 해상수송과 군체계에 대한 계획은 이들이 함께(concurrently)싸운다는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예를들어 걸프지역에서의 전쟁수행 도중에 북한의 남침기도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전략은 약간의 해상 및 공중수송을 통해 병력을 투입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걸프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고 이후에 주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1991년 걸프전의 와중에서 미 합참본부는 북한은 상대로 한 동시전쟁게임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참여했던 한 군부인사는 “비록 이 전쟁게임에서 이기기는 하였지만 몇번의 숨막히는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는 미국이 두개의 주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며 어느 누구도 미국이 수행하는 하나의 전쟁을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콜린 파웰’ 미 합참의장은 ‘win-hold-win’ 전략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하고 있지만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만일 우리가 군사력을 감축한다면 이로써 무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만일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만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나아가야되며 군사비를 삭감하고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 「2-War Strategy:Generals Fear ‘Win-Hold-Win’ Is Really ‘Win-Lose-Lose’」, *Int'l Herald Tribune*('93. 6. 18) —



### III. 통일독일의 제문제



## 독일 통일과정의 제문제

1992년 11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소(BISS)는 “독일 통일 이후의 2년간 : 구동독에서의 현대화 장애와 통일정부의 시행착오”라는 주제로 베를린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첫날 강연에서 BISS의 책임자인 ‘리이쓰히’박사는 구동독의 변화과정은 지금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이유는 우선 전체 통일과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통일정부가 취한 후속 정책들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구상(Concept)이 없었다는 점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기상황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그가 본 독일 통일 과정의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통일은 합병(incorporation)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구서독의 기존구조와 제도 속에 구동독을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통일의 변화과정에서도 구서독의 사회구조, 조직구성원칙, 사회메커니즘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세째, “신연방주(구 동독)”에서는 일종의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여기에서 창조와 파괴란 말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다.)

변화과정의 위기를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구동독의 구조에 대한 파괴가 새로운 구조의 창조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왔다. 둘째로 모두에게 납득될 수 있는 변화전략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 오류들이 사회전반적으로 변화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부구조에서부터 교통요금 체계와 같은 일상적인 법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변화위기”라는 명칭이 타당성을 갖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신연방주에서는 이를테면 “시장없는 시장경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신연방주의 기업들은 옛 공산경제블럭과 몇몇 제3세계 국가와의 경제관계 단절로 오는 경제적 공백을 새로운 시장 개척, 구매력 창출 등으로 보충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제품의 경쟁 능력 결핍이나 시장경제 매커니즘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도 일부의 원인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두드러진 변화 위기는 다음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 공업 생산량이 “통일이전 수준”的 삼분의 일로 후퇴 하였고
- 과학능력(potential)은 통독이전의 80%수준이며
- 국민 총생산량은 통독 이전의 51%수준에 머문다.

또 하나의 특징은 행위의 주체가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변혁은 아직 구동독의 사회적, 정치적 인력에 의해 서 진행되었지만 경제적 변화는 구연방주(구서독)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즉 변화과정에서는 구동독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동독은 앞으로도 장기간 구서독의 공업수준과 일반 생활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변화

방법 뿐만 아니라 목표 자체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당분간,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발전모델”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변화논리는 신연방주에서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변혁의 적정여부의 기준에 대해서 콘스탄츠 대의 ‘렘부르크’ 교수는 ‘구서독의 구조와 제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신연방주에 이식되었는가’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맣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제도만 자연스럽게 이전되었다면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은 사회적 폐해와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었더라도 변화를 성공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합병원을 해체함으로써 그곳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던 의사들에게 개인 병원개업을 사실상 강요하는 일은 비록 성공적인 제도의 이전이라는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동독의 종합병원들을 서독의 개인병원 중심 모델로 개편했을 경우, 의료 비용의 엄청난 폭증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과연 “성공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가는 의문인 것이다.

쾰른대의 ‘쇼이히’ 교수도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구상이 지금까지도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로이한트사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조급하게 추진된 화폐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이를 입증한다. 연립정부도 애당도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일구상을 갖고 있지 못했다.

베를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 교육 담당 ‘후이닝크’ 박사는 구동독 경제구조의 파괴를 변화과정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계획성의 한 지표라고 규정하였다. 현재의 정

치기구들로는 변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변화 구상이 필요하다. 베를린 훈블트 대학 ‘클라인’교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새로운 문제로 확장시켰다. 변화의 문제를 독일과 좁은 의미로 구동독에만 한정하는 것은 동두권과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포괄적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아무리 결점이 많은 것이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것은 서구의 내부개혁을 위한 도전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이제 서구는 더 이상 외부 사회주의 체제와 비교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대상이 없어졌다. 이제 스스로 더욱 진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동독의 시각에서 볼 때 변혁은 서구모델의 이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이태리의 예에서 알 수 있다. 북부 이태리와 남부 이태리간의 소득수준비율은 아직도 100 : 40이며 남부의 실업률은 북부보다 훨씬 높다.

그것은 이태리 정부가 남이태리의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여기에 북이태리의 제도를 이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일에서의 지역적(동서독의 옛국경에만 제한되지 않은 폭넓은 의미에서의) 불균형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BISS의 ‘코크’박사는 이론적으로 볼때나 실제 추세에 맞추어 볼때 “분리발전 모델”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동부의 비약적 발전은 아무리 보아도 전망이 없고, 둘째로 사회주의 구조는 대안없이 붕괴되었으며, 세째로 구서독의 생활여건도 총괄적으로 볼 때 자명하게 더 우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절프대학의 ‘에이들린’교수는 구서독 법의 총괄적 적용,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지 않은 시장경제 채택, 구동독 엘리트의 완전한 배제, 그리고 서독이 취하고 있는 “재교육” 정책은 “합법적인 점령”과 다를바가 없다고 보고있다.

이렇게 볼 때, 구동독 주민은 앞으로도 언제나 구서독 주민에 비해 힘없는 소수를 이룰 것이며 이런 점에 갈등요소가 잠재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협회의 ‘에카르트’는 “파괴”가 구동독 자체의 “결점”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오히려 미리 정해진 수순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동독의 스포츠메커니즘과 제도의 파괴를 예로 들었다. 연방 문교부의 ‘치글러’는 현재 구체적 통일 구상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통일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베를린 사회연구소의 ‘한쉬’ 박사는 과거 프랑스령 이던 ‘자르’ 지방의 독일연방편입을 예로 들었다. 그 편입과 정은 지금과는 달리 비교적 쉬운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수십년이 걸렸고 아직도 그 편입과정은 특히 “동일한 생활수준의 달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종결되지 않고 있다.

막스 프랑크 협회의 ‘비젠탈’박사는 행위주체의 이론 측면에서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행위 주체개념에 대한 정의였다. 그는 행위 주체를 “목적지향적으로 행위하는 그룹이나 개인”이라는 종래의 관행적 정의와 구분되게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과정에서 변혁의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BISS의 ‘토마스’박사는 신연방주에서 과연 누가 “주체”(집단이건 개인이건 간에)가 될 수 있는가, 신연방주의 주민들은 얼마만큼이나 구동독의 혼적을 지우고 새로운 행동전략을 세울 위치에 있는가가 질문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교육담당 ‘마이어’는 “동일한 생활수준의 창조”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동일한 생활수준은 구동독의 낙후된 모든 영역이 아무리 작은 곳까지라도 구서독 수준에 도달한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

아도 신연방주가 구서독 지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다.(그것도 구서독 지역은 더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만) 현재 구서독지역의 더이상 “통일 비용”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하는 정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 “Modernisierungsblockaden im Osten – Turbulenzen im Westen” *Deutschland Archiv*(’93. 2호) –

## 통독후 구동독지역의 청소년 문제

### 【1】

1990년 통일이후에 구동독지역에 거주하던 680만 명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던 기존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들은 1989년 국경이 개방되기 이전인 80년대 중반부터 구 동독의 사회구조가 보이지 않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따라 구 동독 정권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도 이념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채 40년이나 존속해 온 국가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일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제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독일의 관계기관들은 이들 청소년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1992년 2월 청소년부장관 ‘메르켈’의 발의로 구성된 7인의 전문가 위원회(위원장 : 빌레펠트 대학 ‘한스우베 오토’박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당면목표는 현재의 혼란스럽고 극적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현주소를 구동독의 교육 정책적, 청소년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즉, 구동독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구동독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구 동독의 “교육국가”적 이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전문가 대담회 그리고 그룹토론회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여기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각 분야에서 흘어져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 평가되어졌다. 특히 구 동독의 청소년 문제와 교육 연구에 종사해 온 전문가 3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청소년문제 보고대회에서는 지난 40년동안 양측간의 이념문제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정리하는데에 촛점이 모아졌다. 여기에서 보여진 중심쟁점은 구 동독의 어떤 구조속에서 그리고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구 동독의 청소년들이 활동적이고 애국적인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서 교육되었으며, 그 결과와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 【2】

여기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사실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의 전체주의 국가로서 마르크시즘과 레닌주의를 표방한 구 동독이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 노동자 및 농민국가’를 이루한다는 목표아래서 청소년 교육의 목표를 ‘전인적, 창조적,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둔 사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육목표가 구 동독 청소년의 삶의 목표, 행동방식 그리고 의식구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제기된 문제들은 구동독의 교육강령이었던 ‘민중교육’이 개인의 이데올로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계급투쟁적 개념

에 기반하는 “새로운 인간상 확립”이라는 결정론적 교육개념과 함께 국가방위교육 개념에 따른 준(準)군사적 “방위교육”의 제 단계, 즉 나이별로 편성된 학교 교련교육 등의 학교 내외적 교육제도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국가가 청소년에게 전체주의 교육을 시킨 결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정치화 되었다는 점이다.

### 【3】

이러한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구동독의 가정이었다. 왜냐하면 구 동독에서는 부모와 자식관계, 부부와 친구간의 사적관계들 조차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찰과 통제는 위로는 ‘국가안보’와 아래로는 학교 및 기업에 과업으로 주어진 ‘계획완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업무였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인민교육’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사생활 영역을 지속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가 수많은 법령을 통해, 다시 말해 ‘젊은 선구자단 Junge Pionier’, ‘자유독일청소년단 FDJ’ 같은 조직을 통해 요람에서부터 학교, 기업, 대학, 그리고 군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집단에 대해 간섭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가정이라는 정서적 영역이 과연 존재했을까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전체의 복리를 위해 봉사하는 ‘사용 가치있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정이 사회화에 실패한 아동을 가졌다면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가정은 비록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놓긴했지만 결국 경제적 재생산을 놓기 위한 제도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이 중앙집권적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 동독사회에

서 청소년에게 가정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은 국가와 당, 조직에서 정서적으로 더많은 소속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보다는 이곳에서 더많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로써 집단주의적 공동체 행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려는 욕구와 함께 수동적 권위주의적 덕목들이 청소년에게 심어졌을 것이다. 불안, 죄의식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수반하긴 하지만 전체에 귀속되어 있음으로써 느끼는 이러한 ‘행복감’은 서독의 다원론적이고 경쟁 체제하에서는 더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 구 동독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행동 보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구 동독 지역의 청소년 네오파시트들의 ‘아노미’적 폭력 행위는 구 동독에서 익숙해 있던 권위주의적인 귀속점을 갈망하는 마음이 공격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4】

전국민이 종교, 출신, 성(性) 그리고 소득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교육정책을 계속 펼쳐온 구 동독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구 동독 교육제도가 스스로 설정한 이상적인 목표일 뿐이었다. 물론 공산화 이후 기존 시민계층의 엘리뜨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체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신 엘리뜨층과 신 특권계층이 성립되었지만 구 동독은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배타적 사회였으므로 그 새로운 엘리뜨들 내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 특히 여자들은 객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은 대변되지 못했다. 따라서 구 동독은 ‘기회평등이라는 환상’을 가졌을 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청소년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국가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았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집단과 개인의 이념적 혼연일체의 요구도 구 동독의 전형적인 인간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 동독에서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삶을 영유하고 보장받기 위한 ‘노동권리’가 높이 평가되고 장려되었던 것도 구 동독의 청소년 세대에게 체제 특유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긴밀한 상호협조망은 구 동독의 시민들의 새 인간성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구 서독 TV와 라디오로 전달되는 ‘형제국가’의 높은 수준은 언제나 구 동독 청소년의 강요받은 체제순응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었다. 서독 매체에 의해 전달된 이 “멋진 신세계의 환상”은 결국 구 동독의 젊은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와 의식구조에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 【5】

구 동독의 이데올로기적, 구조적 모순들을 다루어보려고 시도한 이 보고대회에서는 이미 과거에 개최되었던 라이프찌히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가치, 기준, 위기”라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때에도 노정되었듯이 현재의 대 변혁에 대해 통일이전과 통일이후의 해석이 일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 동독의 중앙집권적이고 교조적인 체제하에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생활방식상의 덕목에 익숙해 웠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구 동독지역에서의 범죄 및 심화되는 계층간의 갈등과 통일독일의 장애요인들 그리고 ‘강령’에 충실히 살아온 과거의 의식구조와는 다른 반체제적 태도는 ‘변혁’과 ‘재통일’이전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자와 관찰자를 함께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적 교육’을 위시한 모든 차원에서 장

기적으로 접근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한편으로 45년 동안 반파시즘을 국시로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그 나름대로 독재적이고 내셔널리즘의 전통이 지속되어 왔음에 따라 구 동독에서는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표면상으로는 국가에 대해 무한한 귀속감과 만족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복했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로 그들에게서는 집단에 귀속되어 파동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의무적 행동들이 결코 의미있고, 만족스럽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통일이 된 후에 수많은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의 통일 옹호론자들이 기대하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사실에서 근거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Kindheit und Jugend in der DDR,” *Deutschland Archiv* ('93.3호) —

## 통독후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

### 【1】

현재 동독지역의 경제적 상태는 열악하나 각 동독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며 이제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차별과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결핍은 신연방주민들로 하여금 통일독일에 대해 여전히 거리감을 갖게 하였다. 이들이 그동안 겪은 것은 무엇이며,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가? ZEIT지의 의뢰를 받아 Infratest Burke Berlin(베를린 부르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동독주민이 느낀 통일후의 3년을 결산하여 본다.

통일 당시에 동독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독일 연방으로의 편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는 그동안에 노출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함없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

여론 조사방법 : Infratest Burke Berlin은 1023명을 표본 추출해서 185명의 인터뷰 요원이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연방주의 각지를 돌며 인터뷰를 했다. 설문대상자들은 스스로 지난 3년을 결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인터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질문에 응했다.

통일직전인 1990. 10. 3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94%의 찬성을 보였던 통일문제에 대해 아직도 84%의 동독 주민들이 만족스러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주민들은 완전한 통일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그동안에 경험하여 왔다.

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은 통일초기에는 동독의 경제 수준이 2년 이내에 서독과 동일해질 것이라고 믿었으며, 통일 1년 후만해도 68%의 동독주민이 1997년까지는 경제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었다. 그러나 1993. 9월 현재는 전체의 8%만이 그렇게 믿고 있으며 3명중 1명은 동서 불균형이 2000년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신연방주 주민들은 통일의 열매를 차세대들이나 향유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신연방주민들이 통일 후에 느낀 경험은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58%) 정도는 통일로 인해 이익을 보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에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62%)과 대다수의 청소년들(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의 89%)이 속한다. 연금 생활자들중에도 연금이 올라서 이익을 보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에 10명중 4명은 통일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실직자(66%) 그리고 조기 정년 퇴직자(49%)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7명중 1명은 통일이 없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는 특히 DDR(동독)의 해체와 더불어 세력과 사회적 신분을 잃은 많은 PDS(민주사회당) 추종자들이 속한다.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동독 주민들의 절반(53%)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통일은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옹호론을 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통일이 너무 일

씩 왔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동독 주민들이 우선 자신의 힘으로 많은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았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나아가 82%는 과거 동독시절에 긍지를 갖던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통일을 동독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지 못한 정치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주었다.

## 【2】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결정지은 것은 서독 마르크의 도입이었다. 화폐단일화가 이루어질 당시, 구동독 가계의 평균 구매력은 1400마르크였다.

그 이후, 그것은 두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 2870마르크가 되었다. 이것은 서독의 70%수준이었다. 비록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가 35%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50%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소득 성장에 모든 가계가 참여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소득 구조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폐단일화 시기에는 가계 소득이 지금보다 평준화되어 있었다. 당시 전체 가정의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소득은 1000에서 2500마르크(동독 마르크)사이에 있었다. 1990. 7월에는 20%의 가정의 소득이 1000마르크 미만에 머물러 있었으며, 10%의 가정이 2500에서 4500마르크 사이의 소득을 올렸었다. 오늘날은 동독 가정의 4%만이 1000마르크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가정의 순소득은 2500마르크 이상이다. 그동안에 6%의 고소득 계층이 생겨났으며 이들 중에는 5000마르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도 있다.

소득분포도로 볼 때 최하층에는 실직자 가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상층에는 자유직업인, 자영인, 고급 회사원 및 서독회사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 차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소득 격차는 각 개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생계유지에 대한 질문에 2% 만이 자신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37%는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50%는 절약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뿐이다.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가정은 부부중의 하나 혹은 두 사람이 모두 실직했기 때문에 실직 수당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이다.

대부분의 신연방주 주민들의 직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0년에는 18세 이상의 78%가 직업이 있었으나 현재 직장 활동자 비율은 54%이며, 이 중에서 29%는 조만간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5명 중 1명은 타의에 의해서 실직했으며, 4명 중 1명은 실직한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실직한 직장을 바꾸어야 했으며, 10명 중 1명은 직종 자체를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직장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체험을 한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임금 수준향상 이외에도 자신의 책임영역 확장 및 직장의 기술 장비의 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해 경쟁이 심해진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인의 50%는 동독 경제 체제의 결함이었던 노동 조직이 시장제도의 도입이후에 개선되었다고 보고있는 반면, 동독지역 직장인들의 1/3이 종사하고 있는 트로이한트사 잔류 기업들과 공기업 분야의 직장인들은 변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은 공공부문 전체의 서비스가 과거보다 더 관료적으로 되었다고 느끼는 많은 동독 주민들의 일반적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 【3】

사회변혁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과거와는 다른 규정, 다른 법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후 3년이 지난 오늘날, 대부분의 신연방주 주민들은 일상적 차원에서 거의 완전한 적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방주 주민들의 35%, 특히 14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애당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대답하였으며 38%는 초기의 문제들을 지금은 다 극복했다고 대답하였다. 신연방주 주민의 27%는 아직도 문제가 있으며, 그중에 6%는 심지어 영원히 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하고 있다.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중년층 이상인 자(40세 이상), 교육수준이 낮은 자, 실직자, 조기 정년자 그리고 연금생활자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동독인들의 69%는 현재의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고 답하며(이들중에 5%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다), 30%는 덜 만족스럽거나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그 기준이 경제적인 것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 【4】

시장경제가 동독지역에 도입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기간 동안, 예컨대 1992년초 까지만해도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

1991년까지는 응답자중 23%만이 미래에 대해 희의적이었으나, 1993. 9에는 33%로 증가했다. 그러나 56%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동독인의 개인적 상황은 긍정적인 편이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느끼며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또한 통일이후, 마침내 해방되었다고 느끼면서, 자신감과 실천의지로 가득차있다고 답한다.

물론 신연방주 주민의 1/4은 그 정반대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그들은 현재에 대해 불안해하며 어느 정도 이미 채념하고 있다. 이 부정적 시각은 많은 수의 노년계층의 일반적 특징이다. 이들 이외에도 여성, 실직자, 조기 정년자 및 저소득자가 이 부류에 속한다.

동독은 평등 사회로 여겨졌었다. 이 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옳으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동독 주민의 7%가 과거에 상류층에 속했다고 말하며 29%는 중상류층에, 주민들의 절반은 중간에 속했다고 말한다. 나머지 17%는 하류층이었다고 말하며 4%만이 최하층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위계질서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갖는 사회로의 체제변화, 사회의 세분화가 시작됨으로써 신연방주민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새로이 규정하지 안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신연방주민들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명중 1명은 중하류층으로 7%는 최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류층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스스로 중상류층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16%밖에 안된다. 여기에서 동독인은 더이상 자기들을 지도적 계층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점은 일반적으로 동독인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과거 동독에서의 신분상태와 비교해 볼 때 주민의 35%는 하락하였다고 느끼며 여기에는 여성, 중년층 고급회사원 및 실직자가 속한다.

13%는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고 느끼며 남자, 독신자,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 및 사기업 직원이 그렇게 느낀다. 52%는 사회적 지위가 불변했다고 느끼고 있다.

## 【5】

신연방주민들의 3명중 1명은 통일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4명중 1명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 나머지 (43%)는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대개 남자,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성인, 직장인 및 가계 순수입이 3500마르크를 넘는 사람들은 통일로 이득을 보았다고 여긴다. 이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상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서독의 사회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특히 작센 및 동벨글린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실직자, 조기 정년 퇴직자, 가계순수입이 1500마르크 미만 인자 및 50대연령층에 속하는 자는 대다수가 통일의 패자라고 느끼고 있다. 이 연령층은 동독사회에서 정치, 경제 및 직장생활에서 지도층이었다. 이들은 통일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지방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구서독은 신연방주민에게는 언제나 강력하고 능률적인 경제제도를 갖춘 사회로 비쳐졌다. 그러나 지금은 3명중 1명 만이 독일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좋다고 여길 뿐이며, 59%는 덜 좋다고 여기며, 8%는 심지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업분야 종사자 및 주민들 전체에 공통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동독인들은 신연방주의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7%만이 좋다고 생각하고 48%는 덜 좋다고 말하며 46%는 나쁘다고 말한다. 동독인 대부분이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제적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그들의 일반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인적 경제 상태간에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의 62%는 자신의 경제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며 31%는 덜 좋다고 말하며 7%만이 나쁘다고 답한다.

동독인은 처음부터 경제 개혁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노력을 대가로 치루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990년 가을에 ‘경제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들은 세가지 요소를 거의 동등하게 열거했었다. 서독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며(96%), 연방정부가 동독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하며(92%), 신연방주 주민들이 더많이 노력해야 한다(94%)고 그들은 말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동독 주민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40%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76%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몫 찾기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금 인상포기에는 35%만이 동의하고 있으며(1990년에는 62%였다), 86%는 동독인도 내야하는 세금의 세율이 인상되는 것을 거부하며 반면에 서독인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58%(1990년에는 52%)는 서독인들의 추가적 회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6】

동독인들은 통일로 인해 여가선용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97%가 여행 자유를 으뜸으로 여기며 81%는 구 정부가 통제하던 많은 책들이 수중에 넣기가 쉬워졌다고 대답하였다. 과거에는 좋은 문학책을 비밀리에만 구입할 수 있었고 전문서적 및 취미서적은 구할 수조차 없었다.

오늘날의 다양한 문화공급의 질에 대한 평가는 상반적이다. 4분의 1의 신연방주민은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3분의 1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런 상반된 견해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주민들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많이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동독인들은 오늘날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정보를 더많이 얻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 54%는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동독의 획일적 언론을 고려해볼 때, 의외라고 여겨지지만 45%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될 요소는 이미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라디오와 TV에 접하고 있었으며 이것들을 주요 정보원으로 삼았었다는 사실이다.

## 【7】

서독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사회라는 사실은 동독인들에게는 '갑자기 연대성과 후원이 사라진 '차가운' 사회에 처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물질적 가치가 사회적 연대성을 밀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5%는 이 사회에서 돈이 너무 큰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의 장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78%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너무 크지만 그 반면에 자의식(自意識)도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3명 중 2명은 시장경제에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개인은 자아를 실현할 가능성이 많으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생의 목표들이 아직은 서독인들처럼 직접적 목표로서 추구되지는 않고 있다.

신연방주민들은 통일독일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86%). 이러한 생각에는 개인주의 사회이며 범치국가인 서독의 체제에 익숙치 못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연방주민들은 국시로서의 정의(正義)라는 추상적 개념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늘 적용되며 스스로 활용해야 하는 각종 법규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새 사회가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64%) 사회 통합이 늦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통일독일과 달리 DDR시대에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주민이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참여는 동독의 통일사회당(SED)이 추진한 것이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다스리자”는 SED의 슬로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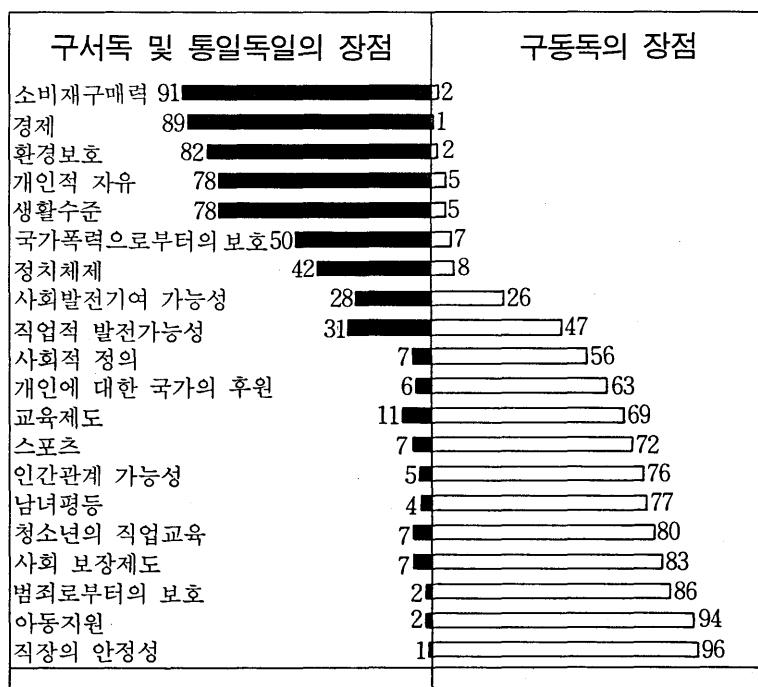
오늘날 정치적 참여는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정당에 대한 신뢰감, 개인적 참여노력이 신연방주민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실은 현재 신연방주의 정당들이 당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위한 후보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 【8】

통일 당시에 동독인들은 서독을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월하고 여겼다.

오늘날도 동독 주민들의 78%는 통일독일의 전형적 특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1990년에 63%가 인정하던 것을 지금은 42%만이 인정하고 있으며 8%는 과거 동독체제가 더우수한 것으로, 2명 중 1명은 양자 모두 좋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도표12 구서독 및 통일독일의 장점과 구동독의 장점 비교**



직업적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31%만이(1990년에는 54%) 통일독일의 현실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47%(1990: 38%)는 과거 동독이 더 나았다고 말하였다. 이들 중에는 여자, 실직자, 학력이 낮은 자 및 저소득자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즉 현재 상태의 곤궁함때문에 과거가 상대적으로 좋아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안정을 원하며 사회적 공평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대한 매력이 많이 상실된 것이 사실임은 직장인중에서도 41%나 동독에서의 직업적 발전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이밖에 구동독의 특별한 장점으로는 직장의 안전성, 범죄로부터의 보호, 아동교육 담당, 사회보장, 청소년 직업교육 및 남녀 평등, 학교제도 그리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후원 등이 열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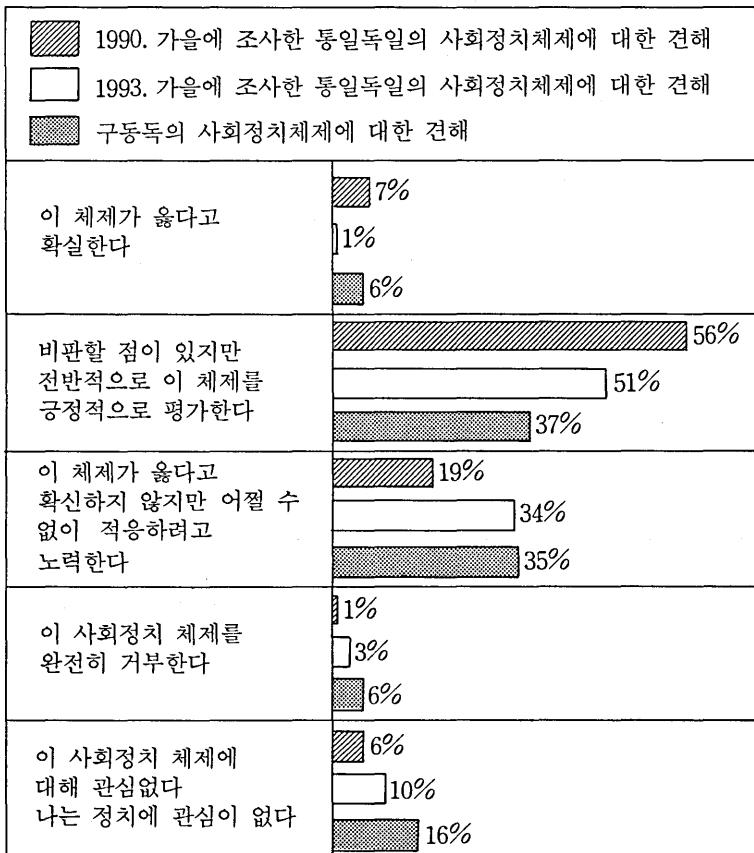
인간관계도 구동독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가 비인간적 사회라는 일반적 통설은 금번 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는 이웃관계에서의 부정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쟁사회인 직장환경에서 조차 직장인의 1/4만이 동료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1/3은 직장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통일독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있음은 1990년에는 응답자의 3/4이 새로운 체제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지금은 52%로 줄어들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정치 체제에 대해 완전히 거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3%에 불과하지만 절반가량이 이 체제가 옳다고 확신하지는 않으나 어쩔수 없이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거나(34%)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10%).

그러나 한편으로는 41%의 응답자가 동독체제가 불만스러웠으나 억지로 거기에 적응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43%는 당시의 체제에 대해 비록 비판적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표13 통일독일의 사회정치 체제에 대한 견해



찬성했었다고 답변하였고 16%는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동독의 통일당 정권은 그렇게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80년대에는 응호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 전후에 시행했던 여론조사에서 누차 확인된 바 있다. 결국 최근의 정치관의 변화는 “통일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的 선전이 점차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 주민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구동독과 구서독의 국민이 모두 통일을 원했지만 양측 모두 통일의 결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서독에서는 정치적 무관심과 극우파가 대두하고 있으며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어서 동독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동독인으로 하여금 통일독일의 사회질서를 수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9】

현재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통일독일 정부 CDU와 FDP는 1990년 선거에서 “동독 부흥”을 주장하는 정당이었고 그 결과 대승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부흥이 지체되는 것과 비례해서 유권자들은 그들로부터 돌아서고 있다.

지금 총선을 실시한다면 연정정부는 30%(CDU : 21%, FDP : 9%)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에는 54%였다. 등을 돌린 유권자들의 절반은 기권하거나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다른 정당에게로 향했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정당은 SPD이다. 1990년에 24.3%이던 것이 지금은 38%로 최다수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Bundnis 90당과 녹색당의 연합당으로서 6.1%에서 13%로 지지율이 높아졌다. PDS도 상승일로에 있으며 13%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공화주의자들은 4%뿐이다.

그러나 1994년 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또한 동독인들은 서독인들과 달리 전통적인 지지정당을 갖고 있지 않다. 연정 정부는 저학력 노동자의 지지를, 90/녹

색-당은 서독과 달리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CDU/FDP뿐 아니라 PDS를 많이 지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지지는 개인의 경제적 처지에 의해 결정된다. 실직자는 SPD(50%)와 PDS(18%)를, 연금생활자들은 CDU(31%)를 지지한다.

## 【10】

구동독시절에 구서독 방송이외에도 동서독 친척의 상호방문이 구동독과 구서독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 서독친척들은 정보뿐만 아니라 필수품 및 서독화폐를 날라주었다. 그러나 통일 후에 서독친척과 교류를 했던 동독인들(전체 동독인의 55%)중에 11%는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2%는 심지어 단교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0%는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며 20%는 더 빈번히 교류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 관계가 개선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많은 동독인들은 새로 서독인들을 사귀었으며 그 경험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33%는 새로운 서독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친척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28%는 새로운 서독출신 직장동료를, 29%는 새로운 서독출신 상관을 알게 되었다. 동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상관에 대해서는 애증이 함께 섞여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독인들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머리 속에 있는 장벽”이라는 말은 서독인들과의 구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서독인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60%가량이 예컨대 남독인과 북독인간에서 보다 더 어렵다고 답하였지만 88%

는 조만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 중요한 전제는 동서간의 경제적 균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인들은 화합의 장애요인을 서독인들에게서 찾기보다는 통일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에서 찾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ES Wachst zusammen,” Die Zeit — ('93. 10. 1)

# 東獨經濟 開發計劃의 不在에서 跛行하는 問題點들

## 【1】

구동독의 남부 지방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여행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면 통일후 3년이 지난 뒤인 오늘날의 구동독의 실상을 확인히 알 수 있다. 에르푸르트(Erfurt)市에서 라이프찌히-할레(Leipzig-Halle)市쪽으로 향해 가면서 볼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갈라진 콩크리트, 깨져 번쩍이는 유리조각들, 녹슨철근, 부숴진 굴뚝 등 마치 유령이 나올 것과 같은 폐허뿐이다. 과거 이 지역에는 구동독 제일의 명성을 자랑하던 로이나/부나(Leuna/Buna)화학 공업단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메르제부르크(Merseburg)의 북쪽에서 할레까지 내려오는 길과 여기를 지나 비터펠트(Bitterfeld)市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이다. 이 길은 엘베강의 지류인 자알레강이 흐르고 있는 곳으로서 그 강 좌우에 깔린 하얀 모래사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라이프찌히 할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과거에 구동독의 루르지방으로 불리웠던 곳으로서 독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때인 1840년경부터 이미 개발되어 왔고 예술과 문화를 꽂파우던 부유한 고장이었으나, 지금은 노천 갈탄광과 죽음의 화학계곡(Death Valley of Chemey)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외곽쪽으로 12Km만 차로 달려 그 폐허지대를 벗어나면 그곳은 라이프치히 할레가 아니라 마치 텍사스의 달라스인 것처럼 푸른 초원 위에 엄청난 쇼핑시티가 형성되어 있어 쇼핑을 나온 승용차들의 행렬이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6500대의 주차시설, 5개의 백화점, 6개의 향수전문점 그리고 50개의 유행상품점과 일반상품점을 갖춘 이 쇼핑시티는 소위 “자알레 파크(Saalepark)”로서 독일 전체에서 가장 큰 단위 상권을 형성한다. 이곳에는 미국식 체인점들이 모여 있으며 구서독의 그 어느 쇼핑시티보다 현대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폴레옹 침입 격퇴 전승 기념비의 한산함과는 대조적으로 구동독에서 초고속으로 절주하는 시장 경제의 승리의 기념탑과도 같이 수많은 구동독 인들의 ‘순례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곁에는 패배의 상처가 널려 있다. 과거 공업지대는 해체되었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서독의 시장 경제가 침투하는 길의 좌우에는 언제나 동독의 해체된 경제와 상실감이 감싸고 있다.

## 【2】

트로이한트사의 제2대 사장인-로베터 (D.K. Rohwedder)가 아직은 수십억 마르크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동독의 공장 설비들은 어느샌가 모두 녹이 슨 고철이 되고 말았다.

경제 불황의 바닥이 이제 곧 끝나리라 희망하던 고철의 나라는 아직도 바닥을 모르며 가라앉고 있다. 실직 수당을 타는 노동청과 파라다이스같은 쇼핑시티를 왕래하는 구동독인들은 그 이중적 자아의 모습으로 인해 일종의 정신분열증 세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스스로의 노동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일 뿐이다. 구서독기업은 구동독에 자기들의 상품을 쏟아 부을 뿐 생산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동독의 생산력을 고갈시켜 놓고 있다.

경제학자 한켈(Wilhelm Hankel)은 「통일방식의 일곱 가지 치명적 오류」라는 논문에서 그런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서독의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는 더 이상 구동독에 새로운 생산공장과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므로 구서독은 계속 구동독을 지원해야 하고 그런 상황의 지속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구서독의 재정능력의 바닥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계획했던 고용 증대 마스터플랜도 이제 아무 성과없이 모두 끝났다. 트로이한트사가 살려 보려고 노력했던 대기업들도 적자만 잔뜩 기록한 채 철거되고 있다. 구동독인들은 트로이한트사가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무마하기 위해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고 일부만을 남겨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연극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상처는 1945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소련에 의해, 그리고 구동독의 통일당(SED)에 의해 폐허가 된 구동독이 지금 통일후에 또다시 구서독에 의해 폐허화 되고 있는 것이다.

### 【3】

구동독은 통일되기 직전에 9백 7십만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신연방주(구동독)에는 5백만명만이 일자리가 있다. 이중에 67%는 남자이고 33%가 여자이다. 따라서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이 아무 대책도 없이 ‘실직 수당’과 각종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공업분야에서는 320만명 중에 24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구동독의 이런 심각한 실직율은 특히 구동독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이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89년의 구동독의 신생아 출생률은 인구 천명당 12명이었는데 반해 지금은 5.3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구서독에서는 같은 기간에 약 천명당 11.7명이었다.

일차대전 직전인 1913년에는 천명당 27.5명이었던 출생률이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18년에는 14.3명으로 줄었다.

히틀러가 대중적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을 했던 때인 1933년은 14.7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치의 선전에 도취되어 1934년에는 벌써 18명으로 늘었고 그 패망년도인 1945년에도 12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신연방주의 남녀들은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할뿐 아니라 모든 변화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기혼자들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두려워하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끊는데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혼인률은 1988년에서 1992까지 65%나 감소해서 출생률의 감소율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고, 이혼률은 같은 기간에 자그만치 81%나 감소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들은 사회의 극적 변화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삶과 생

활의 기반이 송두리체 뽑혔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존의 귀속감을 느낀 것 (그것이 비록 손상된 결혼생활일지라도)에 더욱 집착하는 것이다.

실직한 많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인간가치의 하락을 뼈저리게 체험한다. 그런 상황은 여성 노동자에게 특히 심각하다.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과잉을 해결하려던 히틀러는 여성인력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실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래서 그는 1936년까지 여성의 직장 점유율을 32%까지, 즉 여성 노동자수를 전체 노동자수의 1/3선으로 낮출 수 있었다. 그 수치는 지금의 구동독의 여성 노동자 점유율과 동일하다. 이것은 통일 이전의 구동독 여성취업률 49%(구서독은 41%였다)에 비교해 볼 때 엄청난 감소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다원적 약육강식에 의한 여성인력의 도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구동독인들은 콜 수상에게 경제기적을 바랬었다. 그 소원은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휴지나 마찬가지이던 구동독화폐를 세계적 서독 화폐로 교환받았을 때에 잠시 이루어진 듯이 보였다. 그런 일은 현대 국민경제사에 세 전례없던 돈의 흥수이었다. 콜은 마술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콜수상이 새로운 유권자에게 잠깐 베풀어준 선심에 불과했다.

그 돈을 노리는 서독기업들의 이해 타산과 이 기업들의 눈부신 상품들을 원하는 동독인들의 상품구매욕구가 맞아떨어져 독일경제에 호황이 왔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독제품들은 완전히 외면당했다.

구동독인들은 “상실한 과거”的 고통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듯이 구동독물건을 거의 사지 않았다. 그로

써 구동독의 국민경제는 와해되었고, 그것과 더불어 그들은 자기들의 직장을 잃었다. 경제학적으로 말해서 기존의 구동독기업들은 새로운 화폐제도 속에서는 임금, 비용, 가격등 모든 시장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었다. 결국 화폐단일화는 구동독 경제에 대해 마지막 타격을 주었다.

구동독시민들은 구서독기업과 상인들이 그들의 눈앞에 진열해 놓는 화려한 제품들, 특히 자동차 앞에서는 더 이상 저항 할 수 없었다. 그로써 그들은 현대적 국민경제가 형성된 아래로 이중적인 진기록을 세웠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자동차 공업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난 뒤 3년만에, 즉 화폐 단일화부터 1993.8말까지 전세계로 부터 220만대의 새승용차를 수입했다.

구동독인들은 3년동안에 직장(일자리)두개를 잃는 대신에 한 대의 새 차를 구입한 셈이었다. 또는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이나 프랑스에게 그것과 동일한 수효의 일자리를 마련해준 셈이었다. 왜냐하면 신연방주에 수입된 절반 이상의 차가 독일제가 아닌 외제차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일과정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동독인들은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 생산에 투자하는 대신 외국소비재구입에 충당하고 이로써 동독내 산업은 문을 닫았다. 구동독인들은 생산을 하는 대신에 실직하고 퇴직금 및 실직 수당으로 차를 사고 그들의 직장은 문을 닫게 하는 것이다.

동독인들은 과거의 초라한 산업 대신에 2000년대의 첨단 산업을 육성해 자기지역을 공업지역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 기치하에 슈바벤 지역출신의 쉬페트 R. Späth는 과거의 차이스 (Zeiss)사를 인수해 Jenoptiker라는 광학(光學) 회사를 예나 (Jena)에 세웠다. 그러나 그는 점점 좁아지고 까다

로워지는 세계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도 미약하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예나의 광학 공업단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삼십억 마르크의 자금이 필요하다. 구동독은 지금 자포자기 상태이다. 예나는 지금 일본의 전자제품 판매를 위한 식민지가 되어 있다.

## 【5】

콜 수상은 시장경제 제도의 자체 조정능력을 너무 믿었다. 그가 수수방관하는 동안에 시장경제는 점점 동서독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서독 기업과 은행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원금을 다시 흡수해가고 있다.

서독 대기업은 동독에 새로운 생산공장을 여전히 설립하지 않고 있다. 설립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상징적 의미로 약간만 설립하거나, Opel자동차 회사처럼 엄청난 정부지원금 때문에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설립할 뿐이다. 그들은 서독 자사 제품의 동독 유통망을 확보하고, 백화점을 건설하고, 아프터서비스센터만 설립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서독의 생산 물량은 동독의 수요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게다가 동독인이 높은 임금을 찾아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동독의 임금 수준도 그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동독인 1명의 임금은 평가리인 6명, 체코인 8명, 폴란드인 10명, 불가리아인 20명 그리고(독일 무역협회의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인 3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산이 없는 진공 상태인 구동독지역을 구서독에서 온 화물트럭들과 백화점들이 뒤덮고 있다. 새로운 생산공장이 있으면 기꺼이 스스로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할 구

동독 주민들이 영구실업자로서 살아간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서방의 보조금들을 슈퍼마켓의 수익금으로 변하게 하는 촉매재일 뿐이다.

한켈은 이렇게 묻는다. “독일 인구의 1/4을 구매력과 호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예비집단으로서 계속 먹이만 주어도 되는가?” 그는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래야하는 당위의 문제는 이제 능력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계속 먹여 살릴 수 있을까?

– “Das Glitzern in der Wüste”, Der Spiegel(1993.9. 27)

〈참고자료〉



# FOREIGN AFFAIRS

---

Samuel P. Huntington의

## 문명간의 갈등

### 【1】

오늘날 새로운 국제 사회에서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사상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류사회에서의 분열과 갈등의 지배적인 원인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족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국제정치 사회에서 발생된 중요한 갈등은 서로 다른 문명에 뿌리를 둔 국가와 단체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명간의 갈등이 바로 향후 국제정치무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 발생되는 갈등은 각각의 문명권을 서로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따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문명간의 갈등은 현대사회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갈등의 변화과정에서 최종적인 모습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 웨스트 팔리아 조약으로 등장한 근대국제사회에서 서구사회의 갈등은 대체로 군주들 즉, 황제, 절대군주, 입헌군주들이 상호간에 그들의 관료제도, 군사력, 경제력과 영토를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는 프랑스혁명으로 축발된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갈등의 주류는 군주간의 갈등에서 민족간의 갈등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차세계대전 말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로 러시아 혁명과 그반동의 결과로써 민족간의 갈등은 이데올로기간의 갈등으로 바뀌어 갔다. 또한 냉전체제동안 이데올로기간의 갈등은 미·소 양대강국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것은 고전적 유럽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민족국가도 아니었으며 또한 이데올로기로 동질성을 규정할 수 있는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군주간의 갈등, 민족국가간의 갈등, 이데올로기간의 갈등은 서구문명권내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국제정치 무대는 서구권을 벗어났고 그 무대는 서구권과 비서구권 또는 비서구권 상호간으로 바뀌어왔다. 문명의 정치라는 흐름에서 비서구권문명에 기초를 둔 국가나 국민은 더 이상 서구제국주의의 표적으로써 역사의 피조물이 아니라 역사의 원동력으로써, 역사를 만드는 주체로써 서구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2】

냉전체제동안 세계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제 이러한 분류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권력을 정치나 경제제도로써 또는,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와 문명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깊을 것이다.

문명은 문화적 실체이다. 마을, 지역, 민족집단, 국적, 종교적 집단 등은 여러가지 다른 수준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남부마을은 북부마을과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다같이 이탈리아문화를 공유하며 독일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한편, 유럽사회는 아랍이나 중국사회와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

다. 그러나 아랍, 중국, 서구보다 넓은 문화적 고리의 일부분은 아니다. 단지 문명의 그것을 기초로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때 문명이란 인류를 가장 큰 문화적 범주로 분류한 것이며 또 이러한 문화적 동일성은 인류를 다른 생물체와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인 것이다.

문명이란 공통의 객관적 요소 즉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나 주관적인 자기 인식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수준의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로마주민은 그 스스로를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즉 로마사람, 이탈리아사람, 카톨릭, 기독교도, 유럽인, 서구인 등 그가 속한 문명권은 그가 가장 강렬하게 동질시 하는것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명권은 중국처럼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카리브해 국가처럼 극소수의 사람을 수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문명권은 서구나, 남미, 아랍처럼 다수의 민족국가를 수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본처럼 단일국가만 수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명권은 상호 혼합되고, 중복되며, 소문명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문명이란 역동적인 것이며 흥망과 분열, 통합이 거듭된다. 또 시간의 역사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묻히기도 한다. 서구인들은 민족국가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수세기에 그쳤다. 인류역사의 보다 넓은 흐름은 문명의 역사였다.

### 【3】

문명의 동일성은 향후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세계는 7~8개의 주요문명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로 그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문명권에는 서구권, 유교권, 일본권, 이슬람권, 힌두권, 슬라브-정교권, 남미

권에 아프리카권이 포함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이러한 각각의 문명권을 서로 구분하는 경계선을 따라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문명간의 차이가 단지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데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과 집단 국민과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며 권리와 책임의 중요성, 자유와 권위, 평등, 위계질서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세기 동안의 산물이며 조만간 쉽게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제도간의 차이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갈등이 반드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동안 문명간의 차이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가장 격렬한 갈등을 불러 일으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둘째,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다른 문명권 국민간의 상호작용은 증가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증가는 문명의식을 높이고 문명간의 차이와 동일문명간의 공통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들었다.

셋째, 경제적 근대화와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동질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민족국가가 동질성이 근원이라는 믿음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괴리를 종교가 메꾸어왔으며 이것은 ‘근본주의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이슬람교에서는 물론 서구 기독교, 유태교, 불교, 힌두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 종교의 부활은 국경을 넘나들며 문명을 결속시키는 동일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넷째, 문명의식의 발단은 서구의 이중적 역할로 더욱 고양되었다. 서구의 힘은 그 절정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비서구권에서는 뿌리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점차적으로 일본의 ‘아시아화’ 경향이나 중동의 ‘이슬람화’ 경향, 엘친 정권하의 러시아의 ‘러시아화’와 ‘서구화’에 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세계를 점차적으로 비서구적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과 의지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비서구권의 힘이 최고조에 있는 서구권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서구권 사회의 엘리뜨들은 대체로 서구권과 연계되어 있고 서구권에서 교육받고 서구적 태도와 가치를 수용하고 있었고, 동시에 비서구권의 대중들은 토착적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비서구권 사회 엘리뜨들이 비서구화와 토착화하고 있는 반면 서구적 특히 미국식의 유행과 습관이 비서구권 사회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다섯째, 문화적 특성과 차이는 정치적 경제적 차이에 비해 경직되어 있어 쉽게 타협되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 소연방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의 옹호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 러시안인이 에스토니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나갈때에는 더욱 배타적인 것이 된다. 반은 프랑스인과 반은 아랍인이 될 수는 있지만 반은 카톨릭이고 반은 이슬람이 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경제적 지역주의가 증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권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경제적 지역주의의 성공은 문명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역주의는 공동의 문명에 기초를 둘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공동체 EC는 유럽문화의

서구기독교정신이라는 공동의 기초를 갖고 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의 성공여부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문화의 수렴 여부에 달려있다. 반면에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유사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사회와 문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풀, 기타 아시아국가에서의 화교사이와 같은 공통의 문화권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빨리 확대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문화적 공통성은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극복하고 있다. 만일 문화적 공통성이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향후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은 중국이 될 것이다.

문화와 종교의 차이는 정치적 이슈 즉 인권, 이민, 교역, 환경등 제반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보편적 가치로서 권장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서구의 노력이 다른 문명권으로부터 역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를 기초로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나 단체들은 점차적으로 공통의 종교와 동일 문명에 호소함으로써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명간의 갈등은 두가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문명의 경계선을 이웃하고 있는 집단간에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다른 문명권의 국가간에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를 위해 경쟁하며, 국제기구와 제3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투며, 그들의 독특한 정치적 종교적 가치를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 【4】

냉전체제시 위기와 유혈사태의 발화점이었던 문명간의 경계선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을 대체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데올로기적 분할이 사라짐에 따라 서구기독교와 동방정교 그리고 이슬람과의 문화적 분할이 재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분할선은 1500년에 이루어진 서구기독교 세력의 동부 경계선이었다.

이 경계선은 오늘의 핀란드·러시아 국경선을 시작으로 발트 3국과 러시아 국경선을 따라 백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서 카톨릭적 성격이 강한 서부 우크라이나와 정교회 쪽인 동부 우크라이나를 분리하고 서쪽으로 꺾어져 트랜силь바니아와 여타 루마니아 지역을 구분지으며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현재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유고의 다른 지역을 가르면서 형성되었다. 발칸지역에서 이 경계선은 핵심으로 영토와 오토만 제국간의 역사적 경계선과 일치하고 있다. 이 경계선의 북쪽과 서쪽주민은 신교 또는 카톨릭으로서 유럽역사의 공통적 요소를 경험해 왔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럽경제에 참여의 폭을 점차 넓히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이 경계선의 남쪽과 동쪽의 주민은 정교회나 회교로서 역사적으로는 오토만 제국이나 제정러시아에 속해 있었으며 기타 유럽제국에서의 역사적 사건에 별다른 접촉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경제적으로 덜 발달되었으며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서구와 이슬람 문명권간의 경계선에 따라 일어나는 갈등은 13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서구와 이슬람간의 수세기에 걸친 군사적 성격의 상호작용은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다. 결프전을 통해서 일부 아

립인은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서구와 맞섰다는 사실에 궁지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능력이 없음을 느끼고 있다. 많은 아랍권국가는 그들의 전제주의적 정부 형태와 더 이상 적합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로 향한 노력이 점차 강해질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미 아랍정치제도에서 개방은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의 혜택은 이슬람주의자 운동에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해 아랍세계에 있어 서구민주주의는 반서구 정치세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나 아랍권과 서구권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아랍권과 서구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것은 인구통계적인 측면이었다. 아랍권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서구로의 이민유입을 초래하였다. 반면에 서구내의 내부장벽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사태에 날카로운 정치적 민감성을 보였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의 인종주의 성향은 노골적으로 나타났으며 아랍계와 터어키계이민에 대한 정치적 반응과 폭력은 1990년이래 보다 격렬하고 광범위하게 펴졌다.

역사적으로 볼때 아랍권과의 또다른 반목적인 상호작용은 남쪽의 기독교계 흑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반목은 과거에는 아랍 노예상인과 노예간의 관계 형태로 나타났었으며 현재는 수단에서의 아랍계와 흑인간에 차드에서의 리비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정부간의 내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현대화와 기독교의 전파는 이러한 경계선을 따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권의 북쪽 경계선에는 보스니아에서, 불가리아와 터어키계 소수민족,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분쟁

과 같은 정교회와 희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문명간의 갈등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대륙에서의 희교도와 힌두교간의 갈등은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경쟁에서 뿐만아니라 인도 내부의 호전적인 힌두교도와 소수 희교도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종교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인근국가들과 지역분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중국과 미국간의 잠재되어 있던 의견차이는 인권, 무역, 군비확장 등의 문제에서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은 1991년 중국과 미국간에는 ‘신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바도 있다.

똑같은 용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가 경제적인 마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사회간의 기본적인 가치, 태도, 행동양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과 유럽간의 경제적인 문제는 미국과 일본간의 경제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정치적 알력이나 감정론적인 측면은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일본간의 문명의 차이가 미·유럽간의 문화적 차이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명간의 접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극단적인 경우는 폭력의 형태로까지 발전된다. 경제적인 경쟁의 형태는 서구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간이나 일본과 미·유럽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대륙에서는 극단적으로, 민족정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민족간 분쟁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명권에 속하는 집단간에 가장 빈번하고 격렬하게 일

어났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문명간의 역사적 대립이 재현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아프리카의 돌출부로부터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반달 모양의 이슬람권 국가의 국경선을 따라 발생되고 있다.

## 【5】

어떤 국가나 집단이 다른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와 전쟁에 들어갈 경우 당연히 같은 문명권에 속하는 다른 국가로부터 지원을 획득하려고 한다. 냉전체제 이후 문명적 공통성의 ‘혈족국가증후’가 과거 국가간의 협력과 연대의 기초를 이루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전통적인 힘의 균형이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걸프전쟁이나 코카서스, 보스니아 사태에서 볼 수 있었다.

첫째, 걸프 전쟁에서는 아랍국이 다른 아랍국을 침공하였고 다시 아랍국의 연합, 서구 및 기타국가들과 싸웠다. 공개적으로 ‘후세인’을 지지한 아랍국은 몇 안되었지만 많은 아랍인들은 내심 그를 지지하였고 아랍인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높았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대체로 서구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정부나 쿠웨이트 정부보다 이라크쪽을 지지하였다. 후세인은 아랍민족주의라는 미명하에 노골적으로 이슬람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후세인과 그 지지자들은 이 전쟁을 다른 문명간의 전쟁으로 규정짓고자 하였다. 아랍의 엘리뜨와 민중들의 실질적 계층이 ‘후세인’을 지지하게됨에 따라 반 이라크연합에 가담하였던 아랍국들은 행동을 자제하였고 공식적인 발언의 수위를 낮추었다.

또 아랍국들은 이라크에 압력을 가하려는 서방측의 노력에 반대하거나 거리를 두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서구 제국의 이라크에 대한 태도를 세르비아의 공격으로부터 보스니

아를 보호하지 못하고 서구의 유엔 결의를 무시한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서구의 자세와 비교하였다. 이슬람주의 자들은 서구제국이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명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중적인 기준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혈족국가’에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혈족국가 증후’는 구 소연방의 내부 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2~1993년간 아르메니아의 군사적 성공에 자극된 터키가 그들과 종교적, 민족적, 언어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아제르바이잔 지원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소연방도 아제르바이잔이 공산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였으나 소연방 해체 이후 이러한 정치적 고려보다는 종교적 이유가 우선되었다. 즉 러시아군부는 아르메니아 측에서 전투에 참여하였고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등을 돌려 기독교적인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셋째, 전 유고연방의 내전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서구시민들은 보스니아 회교도들과 그들이 세르비아계에 당하는 공포에 대해 동정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조로아티아계와 회교도를 공격하고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해체에 일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교연방 해체 초기 독일은 전례없이 외교적 이니셔티브와 실력을 과시하면서 EC 11개국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승인하도록 유도하였고 미국도 뒤따랐다. 또 교황이 이 카톨릭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단호한 태도 덕분에 바티칸 당국은 EC에 앞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이로써 서구문명권의 주도적인 국가들은 그들과 종교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를 지원하는데 결집하였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동방정교인 세르비아에 동정적이지만 서구노선에 벗어나지 않는 중립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내 보수세력과 민족주의자들은 정부가 세르비아를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으며 실제로 1993년초 수백 명의 러시아인이 세르비아 측에서 참전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무기가 세르비아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슬람국가들은 회교도들에 보스니아를 도울것을 촉구하고 있고 이란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는등 실제로 1993년까지 24개국 이상에서 4,000여명의 회교도가 보스니아측에서 참전하고 있다. 또 사우디가 무기 및 보급품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보스니아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등과 폭력은 같은 문명권 내의 국가와 집단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다른 문명권 사이의 갈등 보다는 적의가 덜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않다. 다른 문명권 국가들 사이였더라면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동일 문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영토문제 특히 크리미아 문제, 흑해함대, 핵무기, 경제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세기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슬라브국으로서 동방정교를 공통의 종교로 하고 있었다.

1993년초 양국은 분쟁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 시켜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소련연방내에서 회교도와 기독교도, 발틱국가에서 기독교와 동방정교사이 분쟁과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아무런 폭력사태가 유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동일문명을 기초로 한 결집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점차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더욱 더 확산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르시아만 분쟁이나 코카서스, 보스니아 사태가 지속될수록 국가간의 입장이나 대립구도는 문명권의 상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중적 정치가나, 종교적지도자, 언론들은 이점을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거나 우유부단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큰 전쟁으로 발전될 소지가 가장 큰 지역분쟁은, 보스니아와 코카서스에서처럼, 문명간의 경계선을 따라 발생될 것이며, 만일 세계대전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문명권간의 전쟁일 것이다.

## 【6】

다른 문명권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서구문명은 최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방의 초강대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고 서구 제국간의 분쟁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서구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서구에 경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도 없다. 서구는 국제정치 안보기구를 지배하고 또 일본과 함께 경제기구도 영향하에 두고 있다. 국제정치와 안보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도하에, 세계경제문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주도하에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에 비서구 국가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이익을 반영한 UN안보리와 IMF의 결정은 세계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미화되어 제시된다. ‘세계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의 이익을 반영한 행동에 국제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완곡한 집합명사이기도 하다.

IMF나 다른 국제 경제기구를 통하여 서구권은 그들의 경제이익을 촉진하고 스스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기도 한다. 비서구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IMF는 재무장관과 그밖의 몇몇 인사들의 당연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으로부터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서구제국은 서구의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서구 이익을 보호하면서 서구의 정치·경제적 가치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운영하는데 국제기구나 군사력, 경제적 자원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비서구인들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이러한 시각에는 의미깊은 일말의 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력의 차이와 군사·경제 제도적 영향력을 위한 경쟁이 서구와 다른 문명권간의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에서의 차이 즉, 기본가치와 믿음에서의 차이가 또하나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V.S. Naipul은 서구문명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보편적인 문명’이 되고 있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많은 서구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침투해 왔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으로 볼때 서구의 개념은 다른 문명권에서 널리퍼진 개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입헌주의, 인권, 평등, 자유, 법의통치, 민주주의, 자유시장, 정교분리 등의 관념은 이슬람, 유교, 일본, 힌두, 불교, 동방정교 문화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관념은 아니다. 그러한 관념을 전파하려는 서구의 노력은 오히려 ‘인권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비서구문화권의 신세대들의 종교적 원리주의에 대한 지

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할 뿐이었다.

‘보편적인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서구적인 생각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자기와 타인의 구별을 중시하는 경향이나 예외주의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이 다른 국가에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관한 서구의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현대 민주주의 정부는 서구에서 탄생되었으며 이것이 비서구 사회에 도입되었을 때 이것은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이거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향후 국제정치는 ‘서구와 기타 국가’간의 충돌이 될 것이며 서구의 힘과 가치에 대한 비서구 문명권의 반응을 중심축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 중 하나나 복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쪽 극단의 비서구권국가는 베마나 북한처럼 고립노선을 추구하고 ‘부패된’ 서구 문명이 자국사회에 침투되지 않게 격리되도록 하면서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선택의 댓가는 너무 크므로 전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택하는 국가는 몇 안될 것이다. 두번째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상황순응(Band-Wagon)효과에 상응하는 것으로써 서구사회에 동참하면서 서구의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대하고 비서구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서구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고유의 가치와 제도를 보존하는 것이다. 즉 현대화는 하되 서구화는 하지 않는 것이다

## 【7】

향후 사람들이 문명을 기준으로 하여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하게 됨에 따라 구 소연방이나 유고슬라비아처럼 다양한 문명권에 속하는 많은 수의 국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해체의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국가들은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사회에 어떤 문명권에 속하는지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바로 분열 국가들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지도층은 전형적으로 상황순응전략을 추구하며 서구의 일원으로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들국가의 역사나 문화전통은 비서구적인 것이다. 분열국가의 전형적이고 명백한 예는 터어키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터어키의 지도자들은 터어키 國父 Attatürk의 전통을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스스로 현대적이고, 비종교적인 서구민족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NATO에서 또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서구와 동맹관계를 가졌으며 EC 회원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터어키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슬람부흥을 지지하면서 터어키가 중동회교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터어키 식자층이 터어키를 서구사회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는데 반해 서구 식자층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터어키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터어키는 그리이스 국경에서 중국국경에 이르기까지 산재한 7개국을 포함한 터어키 문명권의 재건의 주창자로 나설 기회를 갖게되었다. 서구의 지원아래 터어키는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10여년동안 멕시코도 터어키의 입장에 비슷한 처지

에 놓여있었다. 터어키가 유럽에 대항하는 자세를 포기하고 유럽사회에 참여한 것처럼 멕시코도 반미적 태도를 버리고 미국을 모방하면서 북미자유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멕시코의 지도자들은 멕시코의 원류를 재 정의하는 방대한 작업을 시도하며 궁극적으로 근본적 정치 변혁을 가지고 올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터어키가 가장 심각한 분열국가이며 미국으로서는 멕시코가 가장 가까운 분열국가이고 범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열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가 서구의 구성원인가 또는 독특한 슬라브-정교 문화의 주창자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러시아 역사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로 그동안 묻혀있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서구로 부터 수입되어 러시아 여건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서구에 대항하였다.

공산주의 지배는 서구화와 러시아화라는 역사적 논쟁을 중단하게 만들었으나 오늘날 공산주의가 종식을 고함으로써 러시아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분열국가가 스스로 어느 문명권에 귀속되는가를 재규정하는데는 다음 세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 국가의 정계·재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아가서 열의를 보여야 한다. 둘째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일에 최소한 묵시의 동의를 하여야한다. 셋째 문명권을 구성하는 기존 집단이 이를 기꺼이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뿐이다. 터어키는 처음 두가지 요건만을 충족하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러시아가 서구권에 포용되는데 이러한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8】

비서구권 국가가 서구권에 합류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도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미나 동구권은 이러한 장애정도가 제일 적은 편이고 구 소연방의 동방정교국들은 조금 심한 편이며 회교권, 유교권, 힌두권, 불교권 국가들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 정도가 가장 크다.

서구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은 서구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측면에서는 결코 서구적이지 못하다.

문화적인 이유나 국력의 관점에서 서구권에 합류하기를 원치않는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강화함으로써 서구와 경쟁을 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국내개발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비서구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서구권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류의 협력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유교권과 이슬람권의 유대강화이며 이것은 서구의 이익과 가치, 힘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예외없이 서구국가들은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그리고 몇몇 중동국가들은 오히려 그들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권 또는 비서구권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자체적인 군수산업 발전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 이른바 ‘무기국가’인 것이며 또 다른 결과로써는 원래 서구에서 나온 개념이었고 또 서구의 목표이기로 했던, 군축에 대한 재규정이다. 냉전체제 동안 군축의 주요 목적은 미국 및 동맹국들과 소련 및 동맹국들 사이의 안정적인 군사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이후 군축의 주요목표는 비서구사회

가 서구사회의 이익을 위협할 만한 군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구사회는 이러한 군축의 목표를 국제협정, 경제적 압력, 무기 및 기술이전의 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고 해 왔었다.

서구권과 유교·이슬람권과의 분쟁은,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화생방무기와 이러한 무기를 목표지점 까지 투사하는 미사일등의 첨단 운반수단, 그리고 이러한 무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도장치, 정보수집 등 기타 전자전 능력에 집중되고 있다. 서구권은 이러한 첨단 무기의 확산방지를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추진하면서 비핵 확산 조약과 사찰을 이 규범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 서구권은 이러한 첨단무기를 확산시키는 국가에 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통해 이를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확산저지에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의 관심은 실제적·잠재적으로 서구에 적대적인 국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비서구권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조달하고 보유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핵무기, 화학무기와 미사일 등을 우세한 서구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인도는 배치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아등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고위관리는 모든 이슬람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고 발언하였으며, 1988년 이란 대통령은 ‘공격용으로 써·방어용으로 써의 화생방 무기’의 개발을 촉구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구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개발하려는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군수산업의 개발에 있다. 중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군사비 지출을 급속히 증대하고 군사력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구 소연방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1992년에는 1메가톤급 핵폭발장치의 실험을 행하였다. 또 동력추진능력을 제고하고 공중재급유능력을 갖추었으며 항공모함 구매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과 남지나 해에 대한 주권 주장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국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무기 및 개발기술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리비아와 이라크에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와 신경가스를 수출한 바 있고 알제리아의 원자로건설을 돕기도 하였는데 이 원자로는 핵무기 연구와 생산에도 이용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은 미국관리들이 믿기로는 핵무기개발에만 사용되는 핵기술을 이란에 이전하였으며 사정거리 300마일의 미사일 부품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이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북한은 개량된 미사일과 개발기술을 시리아와 이란에 판매해왔다. 무기 및 무기개발 기술의 이전은 대체로 동아시아 지역국가로부터 중동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반대방향의 예로 중국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스텁거 미사일을 수입한 바도 있다.

유교권과 이슬람권간의 군사적 유대관계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면 권역국가들에게 서구 군사력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무기 및 개발기술의 획득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

서는 Dave McCurdy가 말하듯이 ‘무기확산국과 그 지원국 사이의 반서구적인 상호지원협정’이 형성되어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이 이슬람·유교권 국가와 서구권 국가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종래의 군비경쟁은 일방이 타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또는 군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에서는 일방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반해 타방은 이에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일방의 군비증강을 규제하거나 방해하는 한편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 【9】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문명적인 동일성이 기타 다른 모든 요소의 동일성을 대체할 것이라든지, 민족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든지, 각 문명권이 단일의 정치적 동일성이 될 것이라든지 한 문명권내의 집단들이 다른 집단과 분쟁이나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문명간의 차이가 현존하며 또 그것이 중요하고, 문명의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문명간의 분쟁은 지배적인 국제적 형태의 분쟁으로서 이데올로기거나 다른 형태의 분쟁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 서구문명권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국제관계가 점차적으로 탈서구화 할 것이며 비서구권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작용하는 게임이 될 것이며, 정치·안보·경제 관계의 국제기구는 다른 문명권 간에서보다 동일문명권 간에 성공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문명권에 속한 집단간의 분쟁은 같은 문명내 집단간의 분쟁보다 빈번할 것이고 보다 오래 지속되고 보다 격렬할 것이며, 다른 문명권에 속한 집단간의 격렬한 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가장크며, 세계정치의 축은 ‘서구와 여타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분열된 비서구권 국가의 엘리뜨들은 그들 국가를 서구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큰 장애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당연한 미래 분쟁의 주요초점은 서구와 몇몇 이슬람 유교권국가 간에서 맞추어질 것이다.

이것은 결코 문명간의 분쟁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향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가설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위와같은 가설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 서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가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가진 의미는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조화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서구문명권 내부 특히 유럽과 북미간의 협력과 단결을 조장하며, 서구사회에 서구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진 동구와 남미를 편입시키고, 러시아 및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며, 문명권 내의 지역분쟁이 주요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교권 및 이슬람권 국가의 군비확장을 방지하며, 서구국가의 군사력 감축을 완화하며 동구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유교권 및 이슬람권 국가사이의 차이와 분쟁을 최대한 이용하여, 서구적 가치와 이익에 우호적인 기타 문명권내 집단을 지원하고, 서구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고 합법화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강화하고 이러한 기구에 비서구권 국가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서구의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는 다른 방법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서구문명은 서구적인 것이며 현대적인 것이다. 비서구문명은 서구화되지 않으면서 현대화 되기를 시도하여 왔다. 오늘날까지 일본만이 여기에 성공하였을 뿐이며 비서구 문

명권은 현대화의 구성요소인 자본과 기술, 기능, 기계,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현대화에 대한 시도를 전통적인 문화 및 가치와 절충하려는 노력도 할 것이다.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서구와 비교해 볼때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력은 서구국가들에 근접하고 있지만 가치관과 이해관계는 서구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비서구적 현대문명과의 조화를 위해 서구국가들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서구가 다른 문명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위해서는 서구가 다른 문명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인 기본사고에 대해 또 다른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문명과 비서구문명권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규명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보편적인 문명권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대신 다양한 문명권이 상존하는 세계에서 각 문명권은 상호 공존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 Samuel P. Huntington,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93. Summer) —

# FOREIGN AFFAIRS

Jeane J. Kirkpatrick의

## “문명간의 갈등”에 대한 반론

### 【1】

‘현팅턴’교수는 향후 주요한 세계규모의 분쟁요인은 지금 까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사상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문명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협력관계는 동일한 문명권 국가간에서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반면에 분쟁은 문명권이 다른 국가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확실히 흥미를 끄는 것이지만 문명간의 대립을 상황 판단의 전제로 삼은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현팅턴’교수가 현대문명을 구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는 문명권을 유럽 및 북미를 포함한 서구문명, 유교문명, 일본문명, 이슬람문명, 혹은 아프리카 문명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이라는 것은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정치)기구 등의 공통적 요소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동질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의 동질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집단적 요소가 문명이라면 왜 ‘서구문명’과 ‘남미문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미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미도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유럽의 언어, 종교, 법률, 문학, 이성간의 역할 등 그들의 전통이 이식된 지역이다. 확실히 북미지역에 비해 멕시코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등 의 국가는 인디언 문명의 요소가 강하다. 그러나 브라질, 베를리오즈, 큐바를 제외하고는 남미지역에 있어 미국 이상으로 아프리카 문명의 영향을 받아들인 국가는 없다. 다시 말하면 북미나 남미모두 다른 문명요소를 내포한 서구문명 지역인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서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 냉전의 관점에서 본 동서의 구분은 유럽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슬라브 동방정교계 문명아래 살고있는 사람들 역시 서구문명을 공유하는 유럽인일 뿐이다. 동방정교회의 신학이나 전례, 나아가서 레닌, 트로츠키의 사상도 서구문명의 한 표현인 것이다.

## 【2】

수세기에 걸쳐서 문명의 차이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장기간의 치열한 분쟁을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가장 치열한 분쟁은 오히려 동일 문명권내에서 거듭되며 확산되어 왔다. 스탈린의 대숙청, 폴포트정권의 대학살, 제2차 대전시의 나치스에 의한 대학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확실히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미·일 간의 충돌은 문명간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과 추축국의 동맹관계는 각각 유럽 및 아시아 국가를 함께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걸프전쟁도 문명의 갈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

기에는 2차세계대전이나, 한국전, 베트남전에 비해 이러한 문명간의 갈등요소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걸프전쟁도 비서구권의 한 국가가 그밖의 국가에 도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전쟁이 발발되자 미국과 그밖의 서구국가들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명의 차이가 인식되었을 뿐이다. 미국이 범세계적으로 반이라크 연합을 형성하자 이때까지는 종교색이 희박한 혁명정권의 지도자에 불과했던 ‘후세인’은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부르짖으며 종교적인 지도자가 보여지기 시작했다. ‘헌팅턴’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이슬람 세계의 일부 군부세력이나 반서구의 입장을 취해오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걸프전쟁을 ‘서구 대 이슬람’의 전쟁으로 부각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구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슬람세계는 이라크를 지원하기 보다는 쿠웨이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보스니아의 경우를 볼 때, 세르비아계 과격파들은 스스로의 군사행동을 이슬람에 대한 방파제 역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슬람 색채가 강한 국가들 조차 보스니아 분쟁을 종교전쟁의 성격으로 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또한 보스니아 정부도 분쟁을 이슬람 대 기독교의 구도로 보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세르비아계가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있고 어떠한 동기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의 동기와 목적은 영토 확장에 있지 종교적인 성전은 아니라고 본다.

### 【3】

이슬람문명과 기독교문명 간에는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또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대립의 측면은 오히려 이슬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즉 온건파이며 확장주의자가 아닌 비폭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반근대, 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며 확장주의적이며 폭력성을 띤 세력간의 대립인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개인, 정당, 정부 등 각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른 문명이 아닌 스스로의 정부에 향하고 있다. 어느 이슬람교도는 이들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며 이들은 이슬람교의 원리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정치적 과격주의자 집단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일문명 내부에서의 분쟁이나 대립에는 그밖에도 광신주의 대 입헌주의, 전체주의 대 법의 지배등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일문명내에서의 갈등이 다른 문명 간의 갈등보다 두드러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명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근대화가 지역이나 국가차원에서의 문화적 영향력이나 동질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명과 같은 보다 큰 자기확인을 위한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현팅턴’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이민의 증가가 상호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의 접촉을 가져오게 하는 반면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이민의 증가에 의해 학교나 가정, 일상생활에서 조차 낯선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는 등 서구의 코스모폴리탄 주의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근대화는 서구화와 같은 의미이며 그것이 한편으

로 적의와 반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그는 근대화나 서구의 과학기술, 민주주의, 자유시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비서구사회가 가진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서구화되지 않으면서 근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사회가 근대화와 전통에 대한 양쪽의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대화라는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전통을 유지하는데 성공하는 한 독자성은 보존될 것이며 아울러 사회가 스스로의 독자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원주의적 사회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다원적 세계가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Jeane J. Kirkpatrick, “The Modernizing Imperative……,” *Foreign Affairs*(’93. Autumn) —

## 통일문제 해외시사자료집 '93

---

인쇄일 1993년 12월 13일

발행일 1993년 12월 15일

발행처 통일원  
자료조사담당관실  
(730-6659)

인쇄처 웃고문화사

---

통분 93-12-89

(비매품)

